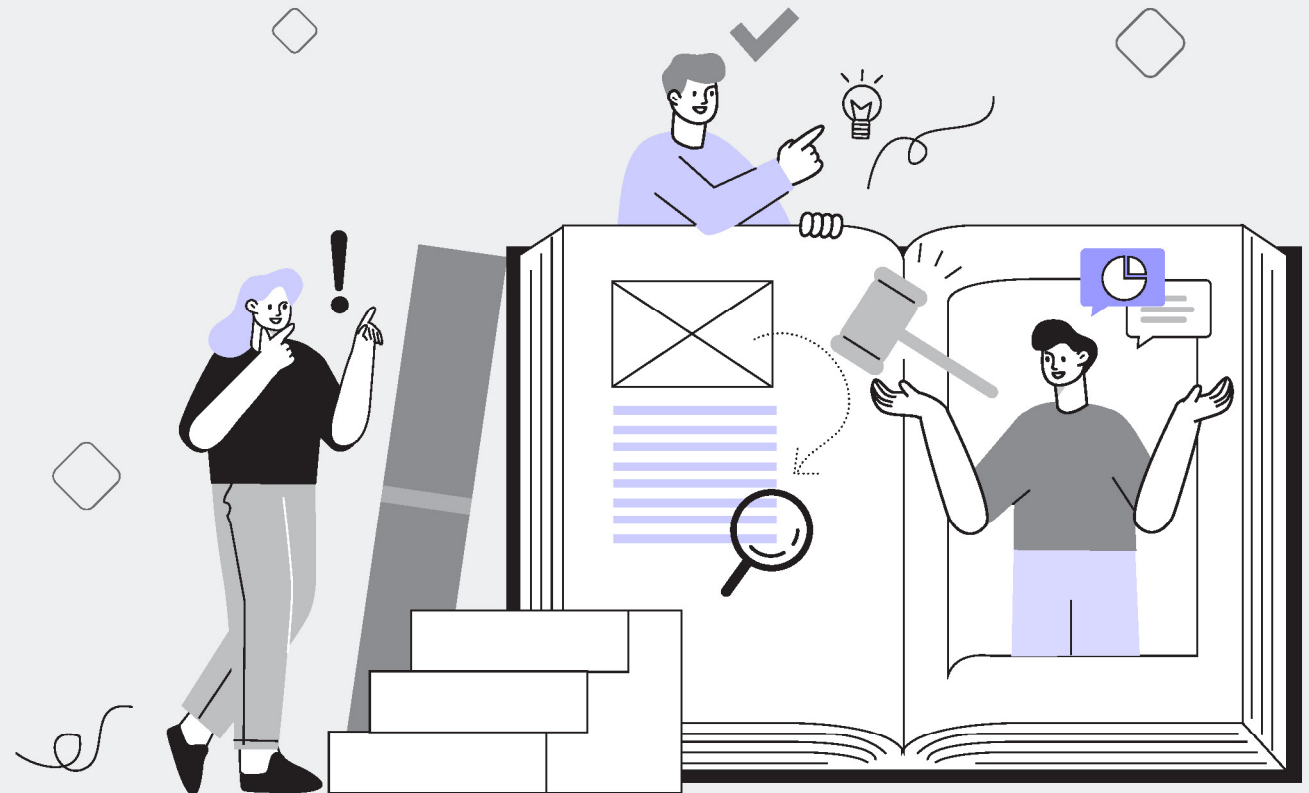


2021년 알기 쉬운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ttp://www.moleg.go.kr>

조례만들기 지원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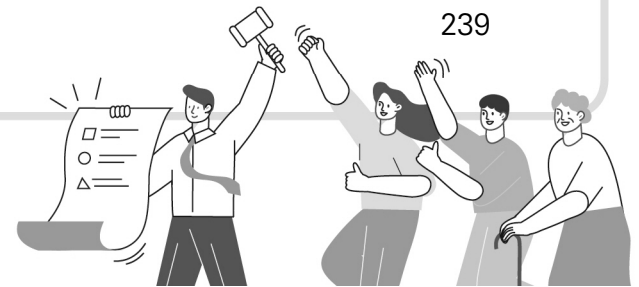
1. 법제처는 2014년부터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 통해 법제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발굴하여 정비안을 마련·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일부 자치법규는 한자어, 일본식 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용어와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문장으로 되어 있고 입법기술적으로도 부적절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의 이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그 자치법규의 입법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제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의 하나로 2020년부터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은 지원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대상으로 어렵거나 부적절한 용어, 주민이 스스로 해석하기 어려운 모호한 문장 및 복잡한 규정체계에 대한 정비안을 제공함으로써 자치입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4. 이 책의 사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책을 활용하여 소관 조례를 정비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를 통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ttp://www.moleg.go.kr>

I. 경제·산업·농림 분야	1
1. ○○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3
2. ○○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조례	21
3. ○○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41
4. ○○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1
5. ○○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65
6. 서울특별시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75
II. 교육·문화 분야	113
1. ○○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115
2. ○○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133
3. 부산광역시 ○○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155
4. 서울특별시 ○○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67
5. 서울특별시 ○○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181
III. 보건·복지 분야	191
1. ○○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193
2. ○○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3
3.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15
4. ○○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231
5. 인천광역시 ○○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239



2021년 알기 쉬운
**조례만들기 지원
사례집**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ttp://www.moleg.go.kr>

I

경제·산업·농림 분야



1. ○○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조례명	지자체
○○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충청북도 ○○군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8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 누락된 법령을 추가하여 정비함. ◦ 도시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법 제2조제3호, 제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는 도시지역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조례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 11. 15.> 1. 도시계획사업 또는 <u>다른 법률에</u>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개정 2019. 11. 15.>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원 <개정 2019. 11. 15.>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u>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u> <개정 2019. 11. 1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에 <u>대하여는</u>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조(점용허가 대상 공원)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u>다른 법률에</u> 따라 공원조성이 끝난(일부 조성이 끝난 경우는 조성이 끝난 부분을 말한다)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5조에 따른 <u>단계별 집행계획</u>(이하 "단계별 집행계획"이라 한다)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 공원으로서 <u>점용허가 신청 당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 터 2년이 지났으나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군수</u>(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	의 적용범위를 명시할 필요는 없어보임. ◦ 띄어쓰기를 수정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203에 따라 '완료된'을 '끝난'으로 수정함. ◦ 띄어쓰기를 수정함. ◦ 반복되는 문구를 약칭함. ◦ 상위법령에 따라 띄어쓰기를 수정함. ◦ 약칭을 반영하여 수정함. ◦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170에 따라 '경과한'을 '지난'으로 정비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184에 따라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정비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개정 2019. 11. 15.〉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u>아니</u>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군수가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 11. 15.〉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5. 노외 주차장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또는 부순 돌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에 <u>대해서는</u>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u>않는</u>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군수가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제3조(공원 점용허가 기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u>시설별 기준에 따라</u>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원의 점용허가를 해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3호 및 별표 1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노외주차장 지상	◦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칭을 정비하고 약칭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203에 따라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정비함. ◦ 체계에 맞춰 별도의 조문으로 정비하고, 내용에 맞는 제명으로 정비함. ◦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함. ◦ 법령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고, 약칭하여 정비함. ◦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u>조치를 취할 것</u> <개정 2019. 11. 15.>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개정 2019. 11. 15.>공원 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개정 2019. 11. 15.>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u>아니하는</u>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u>200제곱미터이하일 것</u>	<u>설치</u>: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또는 부순 돌 등으로 포장한 부분을 점용기간 만료 후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u>조치할 것</u> 2.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 <u>설치</u>: 공원 안에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 <u>설치</u> 및 생산물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3.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u>설치</u>: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창고시설은 창고(냉동·냉장 창고를 포함한 다)나 하역장 목적이어야 하고, 위험물저장·처리 시설이나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u>않아야 한다</u>.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이어야 한다.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필지(이하 "필지"라 한다)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62에 따라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수정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181에 따라 '내'를 '안'으로 정비함. ◦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함. ◦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함. ◦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함. ◦ 반복되는 문구를 약칭함. ◦ 다목과 라목을 합쳐 정비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84에 따라 '안, 밖, 전, 후, 이상, 이하, 미만, 이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22조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개정 2019. 11. 15.> 가. 하나의 공원을 둘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개정 2019. 11. 15.>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 일 것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改築)·재축(再築)·증축(增築) 또는 대수선 가. 해당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	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공원으로 결정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본다. <삭제> 4. 영 제22조제14호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증축(增築)·개축(改築)·재축(再築) 또는 대수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해당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발급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	내, 이전, 이후'는 모두 앞말과 띄어 씀. -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함. - 영 별표 1제9호 내용으로 별포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보임. -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을 명시함. - 법령에 맞춰 띄어쓰기를 정비함. -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11에 따라 '교부'는 '발급'으로 수정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181에 따라 '등재된'을 '기록된'으로 정비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개정 2019. 11. 15.> 나. 증축은 가목의 <u>기존건축물로서</u> 건축물대장에 <u>등재된</u>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이내일 것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둘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둘 이상의 <u>기존건축물</u>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u>아니하는</u> 동일 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9. 11. 15.>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u>부락이</u> 없는 외딴집 등 <u>점용허가로 인하여</u> 진입도로 <u>상·하수도 및 기타</u>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6. <u>공사용비품</u> 및 재료의 적치장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u>면적일</u> 것	된 건축물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해야 한다. 나. 증축은 가목의 <u>기존 건축물로서</u> 건축물대장에 <u>기록된</u>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여야 한다.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둘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둘 이상의 <u>기존 건축물</u>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u>않는</u> 같은 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u>마을이</u>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진입도로 <u>상수도·하수와 그 밖에</u>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5. 영 제22조제15호 및 제15호의2에 따른 <u>공사용</u> <u>비품</u> 및 재료 적치장: <u>공사에</u> 필요한 최소한의 <u>면적으로</u> 할 것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181에 따라 ‘등재된’을 ‘기록된’으로 정비함. ◦ 법령에 맞춰 띄어쓰기를 정비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203에 따라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정비함. ◦ 법령에 맞춰 띄어쓰기를 정비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187에 따라 ‘부락’을 ‘마을’로 수정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180에 따라 ‘기타’를 ‘그밖에’로 수정함. ◦ 법령에 맞춰 띄어쓰기를 정비함. ◦ 근거법령을 적시하여 내용을 명확히 함. ◦ 법령에 맞춰 띄어쓰기를 정비함. ◦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3.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1.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개정 2019. 11. 15.>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그 밖에 반드시 설치 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흙을 쌓거나 가려 막거나 수목식자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개정 2019. 11. 15.>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점용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1. 오수, 폐수, 매연 등을 과다배출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 설치를 위한 경우 2. 가설건축물 설치로 새로운 진입도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공원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등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된 경우 ③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원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허가서에 점용목적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④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공원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의 출입구, 환기구, 필수 부대시설(이하 “출입구등”이라 한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출입구등 주변을 흙 등으로 가리거나 수목 식자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게 해야 한다.	◦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문장을 정비함. ◦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188에 따라 ‘및’을 쉼표로 수정함. ◦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324에 따라 법률이나 규정 등을 나타낼 때에는 홑낫표(「 」)를 사용해야 함. ◦ 체계에 맞춰 항을 분리하고, 근거 법령을 적시하여 의미를 분명히함. ◦ 체계에 맞춰 항을 분리하고, 문장을 정비하여 의미를 분명히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188에 따라 ‘및’을 쉼표로 수정함. ◦ 반복되는 문구를 약칭하여 정비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14. 8. 5., 2019. 11. 15.>	⑤ 공원 점용허가에 따라 공원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 체계에 맞춰 항을 분리하고, 문장을 정비하여 의미를 분명히함. ◦ 약칭에 맞춰 수정함.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15.>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개정 2019. 11. 15.>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개정 2019. 11. 15.>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제4조(점용허가 대상 녹지)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끝난(일부 조성이 끝난 경우는 조성이 끝난 부분을 말한다) 녹지 2.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 당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났으나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녹지	◦ 내용에 맞춰 제명을 변경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203에 따라 '완료된'을 '끝난'으로 수정함. ◦ 약칭으로 정비함. ◦ 약칭으로 정비함. ◦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170에 따라 '경과한'을 '지난'으로 정비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u>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u> <개정 2019. 11. 15.> 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u>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u> <개정 2019. 11. 15.> ②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2019. 11. 15.>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 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15.>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	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u>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u>가 중복결정되어 있는 녹지 제5조(녹지 점용허가 기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를 해야 한다. 1. 영 제2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이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 2. 영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건축법」 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점용하려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u>도로개설 전까지 점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u>	◦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함. ◦ 체계에 맞춰 별도의 조문으로 정비하고, 내용에 맞는 제명으로 정비함. ◦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함. ◦ 법령의 근거를 명시하고, 체계에 맞춰 정비함. ◦ 법령의 근거를 명시하고, 체계에 맞춰 정비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227에 따라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정비함. ◦ 가목과 나목을 합쳐서 정비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에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다. <u>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할 것</u> <개정 2019. 11. 15.>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u>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 250미터이상으로 할 것</u>. 다만, <u>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u>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바. <u>마목의 단지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u>	나. <u>진입도로의 규모는 8미터 이하로 하되, 8미터 이상으로 점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 기준에 따라 점용허가 해야 한다.</u> 다. 도로변에 있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u>진입도로 간의 거리를 250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u> 다만, <u>점용 대상 시설물의 특성상 차량 출입구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라.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 녹지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u>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마. <u>라목의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해야 한다.</u>	◦ 법령을 명시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88에 따라 의존명사 ‘간’ 띄어쓰기 수정. ◦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212에 따라 ‘저해하지’를 ‘해치지’로 수정함. ◦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정비함. ◦ 마목과 바목을 합쳐서 정비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할 것 <개정 2019. 11. 15.> 사. 철도변 녹지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 <개정 2019. 11. 15.>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인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할 것 <개정 2019. 11. 15.> 3.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녹지조성공사 및 해당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	바. 철도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국가철도공단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사. 산업단지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 공장 별로 점용허가해서는 안 된다. 아. 녹지의 결정으로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이 대지에서 맹지가 된 토지를 위해 진입도로 점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해야 한다. 3. 영 제43조제4호에 따른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 이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기준 4. 영 제43조제5호 및 제6조에 따른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	◦ 근거법령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191에 따라 ‘사전에’는 ‘미리’로 수정함. ◦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함. ◦ 약칭을 사용하고,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함. ◦ 제1호에서 제외된 부분을 별도의 호로 정비함. ◦ 보기쉽게 각 목으로 구분하여 정비함. ◦ 근거법령을 적시하여 내용을 명확히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u>공사용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 건축물로 처리할 것</u> <개정 2019. 11. 15.> ③ 제2항의 <u>점용허가는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u>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u>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u> ②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u>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u>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u>하여야 한다.</u> ③ 제2항의 <u>규정에 의하여</u> 점용허가 <u>연장신청을</u>	가. 제4조제1항제5호의 기준에 <u>적합해야 한다.</u> 나. 영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u>의한 시설 및 해당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조성이 끝나지 않은 녹지에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 기준에 대해서는 <u>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 이 경우 “공원”은 “녹지”로 본다. 제6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u>점용 대상 시설물의 특성이 나 공원 또는 녹지조성사업의 시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점용기간을 정해야 한다.</u> ②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u>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u> 군수에게 점용허가 기간 연장을 <u>신청해야 한다.</u> ③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u>기간 연장을</u> 신청받은	◦ 체계에 맞게 내용을 정비함. ◦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168에 따라 ‘감안하여야’를 ‘고려해야’로 정비함. ◦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등) 군수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u>하여야</u> 한다.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u>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u>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u>공사전에 경계측량</u>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u>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u>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u>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u> 한다. ② <u>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u>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u>지적측량</u>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 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조례로 달리 법령 집행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삭제함. ◦ ‘여부를’을 생략하여도 의미전달에는 문제가 없어 삭제함. ◦ 제1항을 이해하기 쉽게 두 개의 항으로 나누어 정비함. ◦ 관련법령을 명시하여 내용을 명확히 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8조(점용료의 납부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 받은 자가 실제 점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15. 11. 16.) 4. 점용기간이 단축되어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 조치 후 납부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제8조(점용료의 납부) 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한 자에게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연액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점용료 환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않은 기간 또는 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못한 경우 2. 공익상 필요하여 군수가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실제 점용 면적이 점용허가 면적보다 적은 경우 4.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실제 점용하지 않은 경우 5. 점용기간이 단축된 경우	◦ 사용료 징수 규정은 '납부해야 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2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209에 따라 '일괄'을 '한꺼번에'로 수정함. ◦ 내용을 고려하여 별도의 항으로 정비함. ◦ 1호를 이해하기 쉽게 두 개의 호로 구분하여 정비함. ◦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203에 따라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정비함. ◦ 환불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점용료를 반환한다는 내용은 적절치 않아 수정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u>앞은 기간분의 점용료를 환불 요청하는 경우</u>		

2. ○○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조례



조 례 명	지 자 체
○○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조례	○○군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조례 제1장 총칙	○○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 삭 제 〉	◦ 구제라는 용어가 ① 자연적인 피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 ② 해충 따위를 몰아내어 없앴 등의 뜻이 있음. - 이 조례에서 ①의 뜻이라면 피해보상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로 하면 될 것이고, - 만약 ②의 뜻이라면 피해예방이나 포획 활동 등에 대한 의미일것이므로 “피해보상 및 예방에 관한 조례”로 하면 될 것임. ◦ 법령 본칙의 조문 수가 많으면(통상 조문 수가 30조 이상인 경우)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으로 구분하고(「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312 참조), 상위 법령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군민들의 생명보호와 농업인 등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 기준과 그 밖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 법률」에서도 장으로 구별하고 있으나 이 조례안의 경우 조문 수도 적고 법령의 장 체계에 따르고 있지도 않아 내용상 ‘장’을 구분할 실익이 없어 삭제함. ◦ 위임 근거가 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명확히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 〈삭제〉	◦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p.86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함. ◦ 이 조례에서 유해야생동물은 현행 제13조(정비안 제14조)에서만 사용되므로 해당 규정에서 설명하고 정의규정에서는 삭제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3. ‘농작물 등’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제5호·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임산물·수산양식물을 말한다. 4. “농업인 등”이라 함은 피해발생 당시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 동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 동법 제2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로서 경작면적과 관련없이 농작물 등을 경작·경영하는 자(임대차계약에 의한 대리경작자 포함)를 말한다. 5. “군민”이라 함은『주민등록법』상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를 말한다. 6. “인명피해”라 함은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이 방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7. “피해면적”이라 함은 농업인 등의 실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피해를 입은 면적을 말한다. 8. “피해보상”이라 함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	2.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제5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피해발생 당시 ○○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작물등을 직접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자(임대차 계약에 따른 대리경작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	◦ 별도로 정의할 실익이 없어 삭제함. ◦ 정비안 제3조에서 인명피해 보상대상을 설명하고 있어 정의규정에서 삭제함. ◦ 정비안 제7조에서 피해면적은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어 정의규정에서 삭제함. ◦ 정비안 제3조 및 제6조에서 피해보상 대상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의규정에서 삭제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을 말한다. 제2장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보상 제6조(보상대상) 야생동물에 의해 농업인 등의 농가 활동 및 군민의 생활 활동시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7조(보상기준) ① 지원금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u>유고</u>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② 지원금의 청구는 피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한다. ③ 피해액 산정은 피해대상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피해보상금은 피해액과 노동력 상실을 감안하여 3월 범위 내에서 생활보조액으로하되 1월분 생활보조액은 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최고 700만원까지 지급할	〈삭제〉 제3조(인명피해 보상대상)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이나 ○○군민이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몸을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해당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제4조(인명피해 보상)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제10조제1항으로 이동) ②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2. 신체상해의 경우: 700만원의 범위에서 의료기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경우 위자료와 장제비용을 합한 보상액은 1천만 원으로 한다.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 1. 피해자 자신의 <u>전적인</u>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u>입산금지 구역에</u>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동·식물을 <u>포획·채취하기 위해</u> 입산하여 <u>야생동물로부터</u> 피해를 당한 경우 4. <u>수렵활동 중</u> 피해를 입은 경우 5. 등산 등 여가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6. 실제 본인부담금이 5만원미만인 경우 7. <u>기타 위원회에서</u> 결정한 경우	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과 생활보조금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생활보조금은 노동력 상실 정도를 감안하여 월 80만원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5조(인명피해 보상 제외) 군수는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u> 1. 피해자 자신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산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입산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동·식물을 <u>포획·채취하기 위해</u> 산에 들어간 피해를 입은 경우 4. 법 제1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5. 등산 등 여가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6. 실제 본인부담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 현행 제14조제1항의 ‘○○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구제 심의위원회’를 조례명 변경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u>제3장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u> <u>제9조(보상대상)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가능한 자로서 제2조 제4조에 해당하는 자이며, 대리경작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관계가 가능하여야 한다.</u> <u>제10조(피해액 산정기준) 농업인 등의 피해면적은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4. 제1항의 피해면적은 피해농지 경작면적에 이장과 조사담당공무원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농작물 피해액 산정은 총 경작면적에 농촌진흥청	<u>서 보상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u> <u>〈 삭제 〉</u> <u>제6조(농작물등피해 보상대상)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에게 농작물등 피해보상을 실시한다.</u> <u>② 농작물등의 피해가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 군수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농지법」 제20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u> <u>제7조(농작물등피해 산정기준) ① 농작물등의 피해액은 실제 경작면적에 이장과 조사담당공무원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피해면적(이하 “피해면적”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u> 1. 농촌진흥청에서 작성한 농·축산물 소득자료(이	관련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여 ‘○○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로 수정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2.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없는 농작물인 경우에는 인근농가의 동일 농작물 출하가격의 70%를 산정한다. 단 인근농가의 동일 농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농작물로 한다. 3. 임산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농업인 등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결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 6.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인으로 적용하여 균등 배분한다. 제11조(보상기준) ① 피해보상금은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② 보상금은 제10조 규정에 의해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예산의	하 “소득자료”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해당 작목별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소득자료가 없는 농작물인 경우에는 인근농가의 동일 농작물 출하가격의 70퍼센트를 소득액으로 하여 피해액을 산정하고, 인근농가의 동일 농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농작물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한다. 3.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농업인등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결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을 합산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제11조제4항으로 이동) 제8조(농산물등피해 보상) ① 농작물등피해 보상금 지급액은 최대 500만원으로 한다. ② 농작물등피해 보상금은 예산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다른 작물로의 대체 여부 등에 따라 달	◦ 실제 보상과 관련된 규정으로 보상금 지급 절차 규정으로 이동규정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u>범위내에서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u>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u>중간생육단계에서</u>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제12조(보상제외) ① <u>피해 농업인 등이</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u> 1. <u>농작물 등의 총</u> 피해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u>총</u> 피해보상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른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4. <u>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 재배 및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u>의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5.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	<u>리 지급할 수 있다.</u>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u>피해액의 80퍼센트</u> 2. <u>중간 생육단계에서</u> 피해를 입은 경우: <u>피해액의 60퍼센트</u>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u>피해액의 40퍼센트</u> 제9조(농작물등피해 보상 제외) ① <u>군수는</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농작물등피해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u> 1. <u>농작물등의</u> 피해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u>피해보상금액이</u> 20만원 미만인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른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4. <u>법령 등에 따라</u> 경작, 재배 및 양식이 금지된 <u>지역에서</u>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 5.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보조 및 지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의 보조 및 지원을 받는 경우 6. 당해년도에 피해 <u>보상한 농작물 등이</u>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7.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8. 농경지 방치 등 <u>농지관리의</u>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9. 설치류에 피해를 입은 경우 10. <u>기타</u>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원을 받는 경우 6. <u>같은 해에 피해 보상을 받았던 농작물등이</u>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7.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8. <u>농경지를 방치하는 등 농지관리에</u>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9. 설치류에 <u>의해</u> 피해를 입은 경우 10. <u>그 밖에</u> 위원회에서 <u>농작물등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u> 결정한 경우	
<u>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병원진단서 및 농작물 등의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농작물 등 피해소재지 읍·면장에게 사고발생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u>	<u>제10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피해발생 사실을 사고발생 5일 이내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피해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다.</u> 1. 인명피해를 입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인명피해보상 신청서 2.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별지 제2호서	◦ (현행 제3조부터 제5조)는 피해보상에 대한 절차 관련으로 보상대상 내용에 관한 조문 다음으로 이동하여 규정함. ◦ (현행 제1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227에 따라 ‘받고자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정비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② 읍·면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피해 지역 <u>관계전문가 등</u> 및 피해자(유족 포함) <u>입회</u>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u>조사서</u>에 따라 <u>피해조사</u>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피해조사결과를 <u>확인조사</u> 후 <u>야생동물</u>	<u>식의 농작물등 피해보상 신청서</u> ②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u>인명피해를 입었을 경우</u> 가. <u>피해보상 신청사유서</u> 나. <u>피해발생 경위서 및 피해명세서</u> 다. <u>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u> 2. <u>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u> 가. <u>피해보상 신청사유서</u> 나. <u>피해발생 경위서 및 피해명세서</u> 다. <u>농작물등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u> ③ <u>농작물등의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자는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피해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u>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u>관계 전문가</u> 및 피해자(유족을 포함한다)와 <u>함께</u>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u>조사서를 작성하여</u>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u>피해조사결과를 확인·조</u>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보상 절차)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읍·면장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된 피해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제14조에 의한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사한 후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된 피해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피해보상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읍·면장 및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피해보상금 지급 여부 또는 지급 결정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 현행 제4조 단서조항은 정비안 제10조제5항으로 이동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환수 등 대장관리)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별지 제4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 1명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환수 및 대장관리)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금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된 피해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삭제〉 ②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	◦ 현행 제10조제6호의 내용이 보상금 산정기준보다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지급에 대한 규정으로 이동 규정함. ◦ (현행 제5조) 환수와 대장관리를 분리하여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229에 따라 '허위'를 '거짓이나'로 수정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190에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13조(피해방지 시설 및 포획) ① 군수는 야생동물 등으로부터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울타리, 방조망 및 경음기(이하 “피해 예방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농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가능한 피해 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국내에서 개발된 시설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이 된 시설 또는 제품 3. 국내 생산업체에서 제조하고 국외 부품을 수입·조합하지 아니한 제품	대장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13조(피해예방시설 지원) ① 군수는 야생동물 등으로부터 농작물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울타리, 방조망 및 경음기(이하 “피해 예방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농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피해 예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1. 국내에서 개발된 시설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이 된 시설 또는 제품 3. 국내 생산업체에서 제조한 것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부품을 조합하지 않은 제품	따라 ‘비치’는 ‘작성’으로 바꾸어 사용함. ◦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지원을 조문을 구분하여 규정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194에 따라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정비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② 군수는 야생동물 등에 의한 인명, 농산물, 임산물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농업인 등의 신청에 의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유해야생동물에 한하여 이를 포획 허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항에 의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u>총기 소지자로서 수렵면허를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개인 또는 단체(이하 “포획반”이라한다)</u>에게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필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소요된 실탄 구입비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차량 연료비 및 식비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의 실비	제14조(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지원) ① 군수는 야생동물 등에 의한 인명 및 농산물등의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유해야생동물(이하 “유해야생동물”이라 한다)의 포획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자(수렵면허를받은 자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소요된 실탄 구입비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차량 연료비 및 식비 3.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의 포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지원을 조문을 구분하여 규정함. ◦ 지원 대상(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는 자)을 명확히 규정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따른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구제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로부터 신체적 상해 및 사망에 관한 사항 3.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근거자료가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4. 기타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 및 농작물등피해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2.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근거자료 확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피해 예방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구제 심의위원회의 약칭은 제5조제7호에서 약칭하였기에 약칭된 위원회를 사용함. -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설치-소속-기능-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하도록 현행 제14조부터 제16조를 수정함.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p.203 참조 - 제15조제1호에 인명피해와 농작물등 피해에 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므로 인명피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함. - 농작물 피해로 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농작물”을 삭제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76에 따라 ‘인(人)’이 홀로 단위로 쓰일 때에는 ‘명’으로 바꿔 씀.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수도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환경수도사업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사업소장, 농업진흥과장, 산림축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군의회 의원과 기타 야생동물 및 농업경영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의원인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면 후임자가 잔여 임기동안 대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관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장, 농업진흥과장, 산림축산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야생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게 할 경우 별도로 연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음. ◦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음(「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p.209). ◦ 일반적으로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데, 이 조례에서는 위원이 아닌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16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1/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회 구성)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담당이 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	제1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삭제〉	“환경관리과장”을 위원장 직무 대행자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맞지 않음. － 환경관리과장을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환경관리과장을 위원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230에 따라 ‘개의’는 한자를 병기하여 ‘개의(開議)’로 정비함. ◦ (현행 제15조제5항) 위원회 구성에서 규정하고 있던 간사를 별도의 조문으로 정비함. ◦ 위원회에 관한 일반조례에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위원회 조례에서 따로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제 〉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p.217 ◦ 위임의 경우 개별·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하고, 위임 규정이 별도로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법제처 2018. 3. 13. 의견제시 18-0025 참조) 해당 규정은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함.

3. ○○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 례 명	지 자 체
○○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군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u>○○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소하천정비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사력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소하천 사용료(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u>○○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소하천정비법</u>」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u>소하천정비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소하천(이하 "소하천"이라 한다)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유수(流水) 및	◦ 점용료와 용어에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어 제명을 수정함. ◦ 목적규정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음(「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p. 77 참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190에 따라 '사력'을 '자갈'로 수정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62에 따라 '~의하여', '~의한', '의한다.'는 '따라', '따른', '따른다.'로 수정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의 감면)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점용료등을 감면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 2.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경우 : 100% 3. 국가 및 도지사, 군수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100%	<u>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이하 "골재"라 한다)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 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등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u> ② <u>군수는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점용·사용한 기간의 점용료등의 120 퍼센트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u> 제3조(점용료의 감면) <u>군수는 법 제22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소하천을 점용한 자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한다.</u> <u>〈제1호에서 제7호까지 삭제〉</u>	◦ 원칙적으로 점용료등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은「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영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100% 5. 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의 경우 : 100%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 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다음 각목과 같이 인정하는 경우 가.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 퍼센트 이상 감소 되었을때 : 100% 나.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 퍼센트 이상 80 퍼센트 미만 감소 되었을때 : 50% 다. 전·답 등이 일시적으로 침수되어 수확량이	1.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점용한 토지(이하 “경작지”라 한다)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된 경우: 점용료등의100퍼센트 2. 경작지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의 수확량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된 경우: 점용료등의 50퍼센트 3. 경작지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의 수확량이	위임한 내용만 규정하고 법령에 규정한 사항은 삭제함. ◦ 조문에서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을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50 퍼센트 미만으로 감소 되었을때 : 30%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등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변상금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한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각각 해당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사력 등 소하천산	50퍼센트 미만 감소된 경우: 점용료등의 30퍼센트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군수는 소하천을 2년 이상 허가 받아 점용·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써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골재 채취료를 제외한 점용료등을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등”은 변상금으로 본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점용료등은 매 회계연도 단위로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을 한꺼번에 징수하되,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한 해에는 허가할 때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부터는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군수는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다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경우와 달리 ‘일시적인 침수’를 명시할 필요는 없어 보임. ◦ 별표 2에는 2년 이상 점용·사용하고 있는 경우 조정 기준이 없는바, 이를 추가할 필요 있음. ◦ 징수 절차, 징수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189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출물 채취가 6월 이상 이고, 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연 4회 이내의 범위에서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우수(流水)사용, 토지의 점용, 골재 채취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2. 한해에 납부하여야 할 점용료등이 50만원을 넘을 것	에 따라 ‘~에 불구하고’를 ‘~에도 불구하고’로 수정.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등에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징수하거나 제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징수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삭 제 〉	◦ 법 제23조에 점용료등 및 변상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함.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사력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제6조(점용료등의 반환) ① 군수는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받고 점용료등을 납부한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 중 점용·사용하지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의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많은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등을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제17조에 따라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골재 채취 허가시 특별한 조건이 없었던 경우로써 허가받은 양을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사용하지 않거나 그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감면된 점용료등을 초과한 점용료등을 납부한 경우 초과 납부한 점용료등을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등의 징수권한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근거 조문을 두고 있고, 제3조 및 제117조에서는 군의 하부행정기관으로 읍·면을 두고 있음. 한편 「○○군 사무위임 조례」에 따르면 소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하천 점용료등 부과·징수 권한을 읍·면장 위임사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위임하려는 경우 명확하게 '위임한다'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함.

4. ○○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 례 명	지 자 체
○○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도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도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고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증대와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법	○○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농업인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하고, 농업인들이 생산한 가공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도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촉진하고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 제명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표현하기 위하여 제명에 “에 관한”을 붙여 정비함. ◦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정비함. ◦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정비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u>인을 말한다.</u>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u>농업인 등이</u>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u>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u> 가. <u>농업인 등이 ○○도에서</u> 안전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할 것 나. 100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u>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을 것</u> 다. <u>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일 것</u>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자 중 <u>도에 주소를 가진 농업인 등을 말한다.</u>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u>농업인 등의</u>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	<u>돈 자를 말한다.</u>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u>농업인등이</u> 경영하는 식품가공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u>농업인등이 도에서</u>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할 것 나. <u>도에 100제곱미터 이내의</u>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은 제외한다)을 <u>갖추고</u> 있을 것 다.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일 것 〈 삭 제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u>농업인등의</u>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	- 정의규정에서 정의된 용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약칭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식품가공사업”으로 약칭하여 사용하는 경우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약칭을 생략함(「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p.85). -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정비함. “영위하다”는 “경영하다”로 정비함.(「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206)) “구비”를 “갖추다”로 정비함(「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174)). - 제1호에서 ‘농업인등’이 도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을 요구하므로 별도로 “사업자”에 대해 규정할 실익이 없어보이므로 제3조제3항에서 약칭으로 정비함. - 현행 제2조제2호에 따라 “식품가공사업”으로 수정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과 사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u>자금·인력·정보·기술·판매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② 도지사는 <u>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이하 “식품”이라 한다)의 품질관리</u>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훈련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10조〉(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도지사는 식품가공사업으로 생산한 제품 등의 품질·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① 도지사는 <u>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지속적으로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하여야 하고, <u>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해야 한다.</u>	과 사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u>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② 도지사는 <u>농업인들이 생산한 가공식품(이하 “식품”이라 한다)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식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u> ③ 도지사는 <u>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운영하는 농업인등(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식품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자주적·지속적으로 식품위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하여야 한다.	◦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용어를 정비함. ◦ 제10조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비함. ◦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함. ◦ 군수의 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므로 통합하여 규정함. ◦ “강구하다”는 “마련하다”로 정비함(「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168). ◦ “~에 대하여”를 “~를”로 수정함(「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 32)).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별표 12에 자가품질검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달리 조례로 모호한 내용을 규정하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② 사업자는 도지사가 추진하는 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하여 ○○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	② 사업자는 도지사가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지도·감독 및 교육·훈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삭제 〉 ③ 사업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므로 후단은 삭제함. ◦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별표 12, 제4항에 자가품질검사기준 및 검사기록서 보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달리 조례로 모호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므로 삭제함. ◦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에 관한 내용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근거법령을 명시함. ◦ “기본계획”이라 약칭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제목을 수정함. ◦ 제1항과 합쳐 정비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 품질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 출연·연구기관, 전문기관 또는 도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를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추진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식품가공사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 도 출연 연구원 및 관련 전문기관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함. ◦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소속의 농업기술센터만 존재하므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의 농업기술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만약 시장, 군수 소속의 농업기술센터도 포함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면 시장·군수와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품가공사업 경영능력,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식품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대한 세부적	1. <u>소규모</u> 식품가공사업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u>소규모</u>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 지원 3. 그 밖에 <u>소규모</u> 식품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협의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시설과 의미와 역할이 같다면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어 보임. ◦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함. ◦ 제1항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u>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제7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농업인 등의 <u>소규모 식품가공 창업활동 지원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촌사회 활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u> 1. 제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에 필요한 작업장, 기자재 등 <u>기반조성</u> 2.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디자인, 포장, <u>컨설팅</u>, 홍보 및 판매 활동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식품가공사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생관리 등)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지속적으로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 가능성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농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드는 <u>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1. 제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에 필요한 작업장, 기자재 등 <u>기반 조성 사업</u> 2.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디자인, 포장, <u>조언</u>, 홍보 및 판매 활동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u>소규모</u> 식품가공사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삭제 〉 〈 삭제 〉	문구를 추가하고 삭제함. ◦ 제2조제2호에 맞춰 정비함. ◦ 현행 제3조와 어구를 통일하여 수정함. ◦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정비함(「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190). ◦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함. ◦ “컨설팅”은 국어순화자료집(2002)에 따른 순화 대상어이므로 순화하여 정비함. ◦ 제3조로 이동하여 규정함. ◦ 「식품안전법」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에 따른 것으로 달리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③ 도지사는 사업자가 <u>식품안전</u>을 위하여 해당 손해 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9조(식품안전 정보공유 등)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상호 의견 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도지사는 식품가공사업으로 생산한 제품 등의 품질·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u>농가</u>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	제8조(보험가입권고) 도지사는 사업자가 식품의 위해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 등 공유)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류할 수 있다. 〈 삭제 〉 제11조(위원회 설치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 내용에 맞춰 조문명을 정비함. ◦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함. ◦ 내용에 맞춰 조문명을 정비함. ◦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함. ◦ 제3조 도지사의 책무와 중복되어 삭제함. ◦ 조례에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형식이 아니므로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기 위하여 ○○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u>둘 수 있다</u>.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지원센터의 지정·운영 3. 식품의 안전·위생관리 4. 사업자의 지원방안 5. 그 밖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위하여 ○○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u>둔다</u>.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지원센터의 지정·운영 3. 식품의 안전·위생관리 4. 사업자의 지원방안 5. 그 밖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를 둔다”고 정비함(「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p.207).
제12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u>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u>.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도농정해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u>호선하며</u>,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1. ○○도의회 의원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련 도내 기관 관계자 3. 식품가공사업 관련 전문가 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농정해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u>호선(互選)한다</u>.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1. ○○도의회 의원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련 도내 기관 관계자 3. 식품가공사업 관련 전문가 등	◦ 내용에 맞춰 조문명을 정비함. ◦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호선의 한자명을 병기함. ◦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의회</u>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u>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의회(開議)</u>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위원회 임기 등 위원 개개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과 따로 규정하는 것이 좋으므로 별도의 조항으로 정비함(「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p. 209). ◦ 위원회의 운영을 별도의 조항으로 정비함. ◦ 위원회의 소집권자 및 의장에 관한 조항이 없어 새로이 정비함. ◦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의회”에 한자명을 병기함(「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제9판, p.168).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되므로 재기재의 실익이 없어 삭제함.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위임의 경우 개별·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하고, 위임 규정이 별도로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법제처 2018. 3. 13. 의견제시 18-0025 참조) 해당 규정은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함.

5. ○○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조 례 명	지 자 체
〇〇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〇〇시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〇〇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4조 및 제39조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〇〇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에 따라 귀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〇〇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어업인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〇〇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2015년 12월 13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 조례는 두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는 조례로 보이지 않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귀농어업인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을 근거 법률로 변경하고 간결하게 정비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시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관내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삭제 〉	◦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적용되므로 재기술할 필요가 없어 삭제함.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귀농어업인의 복리를 증진하고 농어업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귀농어업인을 농어업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 ○○시장이 약칭된바 없으므로 약칭함. ◦ 귀농어업인의 복리 증진은 같은 조 제1항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간결하게 정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u>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u> 제4조(귀농어업인의 책무) 귀농어업인은 <u>교육훈련, 농어업경영자금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영농·영어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한 사업활동으로</u> <u>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촌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4조(귀농어업인의 책무) 귀농어업인은 <u>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고</u> <u>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촌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u>	비함. ◦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노력해야 한다”는 식의 선언적인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귀농어업인에게 영농·영어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어 정비함(「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93, 94쪽).
제5조(귀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u>귀농어업인의 정착과 소득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귀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1. 귀농어업인 유치·홍보·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 귀농어업인 지원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귀농어업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귀농어업인 유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귀농어업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법 제6조에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와 달리 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과 연계하여 규정함. ◦ 각 호의 내용을 서로 관련성이 있는 항목별로 다시 분류해 규정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3. 귀농어업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귀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계획 등의 심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귀농업인의 경우에는 ○○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귀어업인의 경우에는 ○○시 어업·어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평가) 시장은 매년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귀농어업인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귀농어업인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귀농어업인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귀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제6조(성과 평가)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귀농어업인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귀농어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귀농어귀촌법」 제6조제3항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삭제. ◦ 지원계획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해당 계획의 수립 다음에 규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원안 제9조를 정비안 제6조로 이동함. ◦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정비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1. <u>귀농어업 정착을 위한 보조금 및 기금의 용자 지원사업</u> 2. <u>친환경 농어업 지원사업</u> 3. <u>농어업경영의 구조조정 지원사업</u> 4. <u>교육훈련 및 농어업재해에 대한 지원사업</u> 5. <u>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 수리비 지원사업</u> 6. 그 밖에 귀농어업인의 영농·영어에 필요한 지원사업 제8조(지원취소) 시장은 보조금과 용자금 등 각종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고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	1. <u>귀농어업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금 지원</u> 2. 「<u>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 훈련 3. <u>농어업 경영 상담 및 교육</u> 4. <u>농어업 재해에 대한 지원</u> 〈 삭 제 〉 5. 그 밖에 귀농어업인의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제8조(지원 요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금 지원 요건으로 할 수 있다. 〈 삭 제 〉 1. 지원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 주택 수리비 지원은 제1호에 포함되므로 삭제. ◦ 「귀농어귀촌법」 제21조의2에서 지원금 환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금 지급 요건으로 필요한 내용만 규정하면 될 것으로 보여 정비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5. 지원대상 사업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포기한 때 6. 그 밖에 시장이 귀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지역으로 전출하지 않을 것 2. 지원금을 지원 받은 후 5년 이상 실제 농어업에 종사할 것 〈 삭제 〉 〈 삭제 〉 3. 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중지하지 않을 것 〈 삭제 〉 〈 삭제 〉	◦ 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실적 보고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보고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로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게 규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11조(준용) 보조금의 지원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삭제 〉	정하는 것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다르게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삭제(법제처 2019. 4. 19. 의견제시 19-0119). ◦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당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므로 “준용”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87쪽) 그리고 상위법령과 관련된 내용이 조례에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여부는 그 내용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일괄적으로 상위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상위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제 〉	◦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 규정이 별도로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법제처 2018. 3. 13. 의견제시 18-0025 참조), 해당 규정은 실익이 없어 삭제.

6. 서울특별시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 례 명	지 자 체
서울특별시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구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서울특별시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같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 표현 수정. ◦ 일반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므로 각각 해당되는 조문에서 약칭으로 처리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제2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모든 공간(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수	◦ 인용 조문 및 표현을 수정하고 각 호의 내용은 항을 나누어 규정.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 단,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 2. 실태조사 시기: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선택하여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u>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u> 등에 관한 사항 나. <u>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율</u>, 적법 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삭제〉 〈삭제〉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u>시간대별 주차 차종·위치·대수, 주차장 회전율</u>, 적법 주차 여부 등 주차실태 3. 그 밖에 <u>주차수요 및 주차시설 현황과</u>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의2제3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삭제함. ◦ 실태조사의 주기는 시행규칙 제1의2제2항에 규정되어있는 내용으로 삭제하고, 뒷 부분은 정비안 제3항제2호에서 규정.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주차시설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2.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및 적법·불법 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하되, 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선택하여 조사할 것 ④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급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수급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公簿) 등에 기초하거나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조사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삭제〉	◦ 표현 수정. ◦ 현행 후단의 경우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함. ◦ 지자체의 규칙은 위임 규정이 별도로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법제처 2018. 3. 13. 의견제시 18-0025 참조),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이 100분의 70 이하인 지역을 말한다. 1.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2.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담장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 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구청장이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1. 담장허물기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해당 규정은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 ◦ 「주차장법」 제4조제1항에서는 비율과 지역을 각각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항을 나누어 따로 규정함. ◦ 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제2호는 삭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5조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주거지역에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정). ◦ 표현 수정.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건설 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u>융자 등</u> 〈 신 설 〉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 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건설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5. 그 밖에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삭 제 〉 제4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법 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해도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이하 “긴급자동차”라 한다)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않아도 해	◦ 법 제4조의3과 동일한 규정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함. ◦ 위임조례임을 감안하여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순서(법 조문의 순서)대로 규정함. ◦ 인용조문 수정. ◦ 표현 수정.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u>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제23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u>당 지역의 재난인명구조에 지장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u> 제5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법 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삭제 〉 〈 삭제 〉	◦ 위임조례임을 감안하여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순서(법 조문의 순서)대로 규정함. ◦ 부설주차장의 경우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 영 별표1 비고 제10호에서 지자체 구분 없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조례가 우선 적용될 것이므로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현행 제2항, 제3항, 제4항)「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마감하되 평탄하게 할 것 2. 주차장 바닥면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표시를 할 것 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발견이 쉬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이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을 말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유수지나 하천을 복개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제	〈 삭제 〉 제6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이란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	◦ 위임조례임을 감안하여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순서(법 조문의 순서)대로 규정함. ◦ 정확한 명칭으로 씀. ◦ 인용조문 및 표현 수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영업시설은 없어 삭제.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외한다)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로 한다. 〈 신 설 〉 제24조의2(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장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운동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자동차 관련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삭 제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에서 지자체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포함한 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세부사항을 광역단체(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제24조(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총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관리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③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	제7조(여성우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여성우선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사각(死角)이 없는 밝은 장소 2. 주차장 출입구, 관리소 또는 승강기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하여 접근성·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 감시가 용이하고 일반의 통행이 많은 장소 ③ 여성우선주차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여성전용주차 표시를	◦ 법 제6조제2항에서 특별시 조례를 포함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부설주차장의 경우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 달리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조례가 우선 적용될 것이므로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표현 수정. ◦ 한자 표기. ◦ 현행 제2호와 제4호는 비슷한 내용으로 하나의 호로 합하여 규정. ◦ 외래어 순화 및 표현 수정. ◦ 표현 수정 및 별지 번호 변경.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u>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u> 제2장 노상주차장 <u>제16조(하역주차구획)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노상주차장 안에 지정한다.</u> <u>② 하역주차구획에는 제18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u> <u>③ 하역주차구획에는 알아보기 쉬운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u> <u>⑤ 하역주차구획에는 화물의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u> <u>④ 하역주차구획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u>	<u>해야 한다.</u> 제2장 노상주차장 <u>제8조(하역주차구획)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경우 운전자가 하역주차구획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제16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 구역, 제한 차종, 제한 사유 및 위반시 조치 등을 적어야 한다.</u> <u>② 화물자동차 및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하역주차구획에 주차해서는 안된다.</u> <u>③ 하역주차구획에서는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해서는 안된다.</u> <u>제9조(노상주차장 관리 위탁)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현행 제1항) 법 제7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 ◦ 같은 주제인 현행 제2항과 제3항을 하나의 항으로 묶어서 규정. ◦ 표현 수정. ◦ 현행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따로 나누어 규정. 이하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제15조(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제한 등) ①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	자에게 노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서울시설공단 2. 「서울특별시 ○○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 시설관리공단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선정된 자 〈 삭제 〉 제10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관리자(구청장 및 제9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관리를	같음. ◦ 명확하게 수정. ◦ 표현 수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탁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특정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특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어 삭제함. ◦ 표현 수정.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는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노상주차장 1회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표현 수정.
제7조(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제한장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해당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해당 주차요금·가산금 및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해제비	제11조(주차요금 미납 자동차 운행 제한 장치)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해당 노상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자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이하 “이동제한장치”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제한장치가 설치된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가 미납된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바로 이동	◦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따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 ◦ 표현 수정 및 약칭 규정. ◦ 해제 비용 등에 대해선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은 상위법에 위반되어 삭제함. 이하 현행 제3항도 같음.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용”이라 한다)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차량 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제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하는 경우: 해제비용 미징수 2. 주차장 운영시간 외의 시간에 해제하는 경우: 해제비용으로 3만원 징수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하역주차구획) ⑥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	제한장치를 해제해야 한다. 〈삭제〉 제12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에서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등에게 주차요금 외에 해당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	◦ 하역주차구획을 같이 규정하고 표현 수정. ◦ 표현 수정.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를 사용하지 아 니한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경우: 이미 4시 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 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 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 과하며, 해당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2급지인 경우에는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을, 3·4·5급지 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 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3.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시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 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5.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	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미납한 주차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하고, 이 기간 동안에 운전 자등이 미납한 주차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 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 차요금은 주차장의 장소 및 주차 시간에 따라 산 정하되, 주차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을 산정한다. 이 경우 주차장이 1급지 또는 2급 지인 경우에는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3급지부터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현행 제1호는 가산금의 부과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항을 신설하고 표현 수정. ◦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으 므로 별도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 이하 같음.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6.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에 화물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 외의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7.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8.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9.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10. 제12조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 사용 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않고 주차한 경우 제14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13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방법)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 징수를 위해 노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운전자등에게 주차쿠폰을 발급하거나 주차표를 교부할 수 있다.	◦ 표현을 간결하게 수정하고 징수 방법이 다른 것은 항을 나누어 규정.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를 사용하는 방법 2.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해 구청장은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은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운전자등이 주차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주차시간측정계를 노상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운전자등에게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노상주차장 운영 시간이 끝나기 2시간 전에 노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등에게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미리 납부한 운전자등이 노상주차장 운영이 끝나기 전에 노상주차장 이용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받은 주차요금에서 노상주차장 이용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제외한 금액을 운전자등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14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인근 주민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이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	◦ 표현 수정. ◦ 표현 수정. ◦ 인용조문을 삽입하고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 약칭 삽입.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수 있다. 제13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② 노상주차장의 일부를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 때에는 설치구간·이용대상차량·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2조에 따라 주차구획별 지정을 받은 자가 월 단위, 분기 단위로 요금을 선납한 후 주민등록 이전 등의 사유로 중도에 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일할계산에 따라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한다.	한 경우 해당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사용자를 월이나 분기별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를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한 경우 설치구간·이용대상차량·운영시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전용주차구획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거주자우선주차역을 이용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이용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우선주차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이전 등의 사유로 중도에	◦ 인용조문 변경 및 순찰차의 개념 명확화. ◦ 표현 수정. ◦ 표현 및 별지 번호 수정. ◦ 표현 수정.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제8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의 2제1항, 제17조제2항,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일할계산에 따라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15조(주차거부 금지)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상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싣고 있는 경우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나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운전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운전자등이 해당 노상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표현 및 인용 조문 수정. ◦ 법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미납에 따른 주차장 사용 제한에 대한 근거를 두고있지 않음.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u>이상 제납한 경우</u> <u>제1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 관련 표지에 따른다.</u> <u>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 구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u>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u>주차장의 운영시간</u> 4. <u>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u> 5. <u>그 밖의 주의사항</u>	<u>〈 삭제 〉</u> <u>제16조(노상주차장 표지)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이하 “노상주차장표지”라 한다)를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u>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u>노상주차장 운영 시간</u> 4. <u>주차 방법 및 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u> 5. <u>그 밖에 노상주차장 이용 시 주의할 사항</u> <u>② 노상주차장표지의 규격은 노상주차장의 특성, 노상주차장 이용자의 편의성, 주변 시설물의 배치</u>	◦ 해당 사항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 ◦ 내용이 다른 사항을 항을 나누어 규정하고 표현 수정. ◦ 현행 제18조제2항 후단의 내용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제10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17조 삭제 제3장 노외주차장 제19조(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명칭·위치·규모·운영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현행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상태 등을 고려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정한다. 〈삭제〉 〈삭제〉 제3장 노외주차장 제17조(노외주차장 설치 고시) 구청장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명칭, 위치, 규모, 운영시간 등 노외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18조(노외주차장 관리)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관리·위탁에 관하여는 제9조,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본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4조 등에 따라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 ◦ 인용 조문 및 약칭 추가, 표현 수정. ◦ 관리위탁 근거(정비안 제9조), 주차요금 미납 자동차 운행 제한 장치 설치(정비안 제11조), 주차거부 금지(정비안 제15조)의 내용을 준용하는 규정으로 변경.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u>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u> <u>②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u>	<u>제19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u> <u>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운전자등에게 대한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본다.</u>	◦ 정비안 제12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등)과 노외주차장을 분리하여 규정. ◦ 준용 규정을 두어 처리.
<u>제20조(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③ 공영노외주차장의 개인택시, 용달화물 및 개별 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관 요금은 별표 1의 5급지 월 정기관란의 주간금액과 야간 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u>	<u>③ 구청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영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월 단위로 주차하는 경우 5급지 주간주차요금과 야간주차요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한다.</u>	◦ 현행 제20조제3항의 내용은 택시와 화물자동차의 주차요금을 정한 규정으로 비슷한 주제의 조항으로 묶어서 규정.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제20조(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 주차권·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노외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일 주차권: 1일 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시간에 대한 금액 2. 월 정기권: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계산한 금액 제21조(주차장의 표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표지 상단에 ○○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방법)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일 단위나 월 단위로 주차권(이하 “정액주차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액주차권을 발행할 때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폐쇄 등으로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액주차권을 구입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1. 1일 주차권: 1일 주차권의 1시간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 × 노외주차장 미사용 시간 2. 월 정기권: 월 정기권의 1일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 × 노외주차장 미사용 일수 제21조(노외주차장의 표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표지는 제16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표지에 따르되, 표지 윗부분에 노외주차장관리자를 표시해야 한다.	◦ 표현을 간결하게 수정하고 약칭 추가. ◦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 ◦ 인용 조문 및 표현 수정.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u>제18조(주차장의 표지)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 구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u> 제4장 부설주차장 <u>제25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u>	제4장 부설주차장 <u>제22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가 6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u>	◦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제26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필요한 <u>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u>으로 한다. 제2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	제23조(시설물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소에 있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필요한 <u>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u>으로 한다. 〈 삭제 〉	◦ 표현 수정. ◦ 법 제19조제5항에서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처럼 조례로 ‘무상 사용하게 할 노외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끔 달리 정할 수 없어 삭제.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u>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u> <u>4. 건축비: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u> <u>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및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u> <u>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u> <u>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시설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u>	<u>제2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①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가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물 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u>	◦ 현행 제2항을 참고하여 삭제한 현행 제1항을 새로 규정. ◦ 표현을 명확히 수정.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며, 토지가액 산정은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3. 주차구획 1면의 면적: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4.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 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 총액의 30퍼센트를 감액한다. 5. 법 제19조의1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 총액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19조제6항 단서 및 영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30퍼센트를 감액한다. ⑤ 법 제19조의13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가 부설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부설주차장 설	◦ 삭제한 현행 제1항제3호의 내용을 제3항으로 이동하여 규정하고, 인용 조문을 참고하여 용어 수정(토지가격비준표). ◦ 표현을 명확히 수정. ◦ 표현을 명확히 수정.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u>제27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부터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권(주간·야간)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u> <u>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u>	<u>치비용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u> 〈 삭제 〉 <u>제25조(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무상사용증을 발급해야 한다.</u> <u>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정</u>	◦ 해당 사항은 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 ◦ 표현을 정비하고 다른 주제인 무상사용증 발급과 발급대장 관리는 항을 나누어 규정. ◦ 별지 번호 변경.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 신 설 〉 제28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 기준을 말한다)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1[주차대수의 총합이 홀수대일 경우(주차대수 -1)의 2분의1대]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장 기계식주차장 제26조(기계식주차장의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서울특별시조례”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한 기계식 주차장치 주차대수의 총합이 홀수이면 총 주차대수에서 1대를 뺀 수를 총 주차대수로 하여 산정한다.	- 표현 수정. - 계산 방식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 - 영 제12조의5제3항과 같은 내용이므로 삭제.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5장 용자 제29조(용자 또는 보조의 대상) ② 법 제19조제12항 및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시설물을 개조하여 법정 주차장대수 외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2.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중 <u>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u>	제6장 보칙 제27조(보조 또는 용자 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서울특별시 ○○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주차장특별회계”라 한다)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기존 시설물을 개조하여 <u>법 및 서울특별시조례에서 정한 주차장 규모에</u>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2.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u>구청장이 정한 기준을 갖춘 자</u>	◦ 법 제6장과 이름을 통일함. ◦ 보조와 용자 중 법에서 규정된 방식과 통일하여 보조 먼저 규정함. ◦ 각 호 표현 수정.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3.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려는 자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 ○○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통보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을 포함한다)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려는 자 2.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제30조(용자 또는 보조의 방법) ③ 구청장은 용자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 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려는 자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용자할 수 있다. 1. 평면식 주차장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노외주차장으로 설치하려는 자 2.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정한 기준을 갖춘 자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용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서울특별시 ○○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 인용조문을 추가하고 표현수정. ◦ 현행 제30조 삭제 및 내용을 고려하여 정비안 제28조로 통합하여 규정.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제30조(용자 또는 보조의 방법) ① 제29조에 따른 용자금 또는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자금의 지급절차, 용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과 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한도 등 용자 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수 있다. 〈 삭제 〉 〈 삭제 〉	◦ 현행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조문들은「서울특별시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자체의 규칙은 위임 규정이 별도로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처 2018. 3. 13. 의견제시 18-0025 참조), 해당 규정은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함. 이하 같음.
④ 주차장 설치 보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2.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법	제28조(주차장 설치 공사 대행) 구청장은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의 비용으로 주차장 설치 공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	◦ 보조나 용자는 비용 지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직접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문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제32조(보조금의 회수)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다른 용	제30조(보조금의 회수) ① 구청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차장	◦ 내용이 중복되는 현행 제32조제1항과 제33조제1항은 하나의 조항으로 묶어서 규정.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u>도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u> <u>제33조(보조공사비의 반환) ① 제3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비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u> 1.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에는 예외로 한다.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 <u>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율, 회수방법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u> <u>제33조(보조공사비의 반환) ②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비를 받은 건물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는 양수인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채무를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u>	<u>을 설치한 자가 해당 주차장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u> <u>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건물의 소유자(제2호의 경우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가 해당 주차장이 제28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공사를 대행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를 말한다)에게 주차장 설치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 허가로 인해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주차장 설치공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 2. 구청장이 설치공사를 대행하여 조성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 현행 제33조는 보조금의 회수에 대한 내용으로 제2항으로 편입하고 표현 수정. ◦ 해당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어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u>조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u> 1. <u>부동산 소유권이전 시에 양도인이 특약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양수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수인이 공사비를 반환</u> 2. <u>부동산 소유권이전 시에 양도인이 특약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양수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이 공사비를 반환</u>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공사비의 반환은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u>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한다.</u>	◦ 구청장이 직접 대행한 경우는 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따로 규정함.
제31조(용자금의 반환) 용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u>반환하여야 한다.</u> 1. 용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u>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u> 다만, 도시계획정비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의 용도변경 및 소멸은 예외로 한다.	제30조(용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27조제2항에 따라 용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자금을 즉시 <u>반환하도록 해야 한다.</u> 1. 용자금을 <u>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u> 2. <u>용자금 상환 기간 중에 용자금을 받아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노외주차장이 소멸한 경우.</u> 다만, 도시계획정비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표현 수정. ◦ 정비안 제30조는 용자금을 지급할 때 은행에서 용자금 지급 조건 등으로 따로 규정하여 동의를 받으면 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삭제 검토 필요.

현행	정비안	검토 의견
3. 용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u>착공하지 아니한 때</u> 제3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용자금을 지급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u>시작하지 않은 경우</u> 〈 삭제 〉	◦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위임 규정이 별도로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

2021년 알기 쉬운
**조례만들기 지원
사례집**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ttp://www.moleg.go.kr>

Ⅱ

교육·문화 분야



1. ○○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조 례 명	지 자 체
○○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도 교육청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이나 공제사업 가입 등은 수강생 당 배상금액이 1억원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상보험 또는	○○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안전조치 의무)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및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등”이라 한다)는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강생 당 1억원 이상의 배상액	◦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정비함. ◦ 보험에 관해 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 제12조를 제2조로 이동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료실비(학원·교습소 내의 치료비 포함) 보상금액은 수강생 당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③ 학원 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이나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처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알맞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⑤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나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원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을 지급하는 보상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하며, 이 경우 의료 실비 보상금액은 수강생당 3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이하 “원격교습학원”이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학원설립·운영자등은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학원설립·운영자등은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서 교습이나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처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수강생들이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알맞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⑤ 부모 등 수강생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나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 보상보험 또는 공제사업의 내용 중 의료실비 3천만원 이상은 1억원에 포함된 것을 전제로 하는바,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에 따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법 제24조에 따라 원격교습학원의 경우가 제외됨을 명시함. ◦ 「교육기본법」 제12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기재의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권고. ◦ 신체·정신상의 자유 등은 학습자의 기본 인권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교육기본법」 제12조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재의 실익이 없어 삭제 권고.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2조(학원시설) ① 학원은 교육환경과 보건위생을 위하여 적합한 장소에 <u>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u> 1. 강의실 또는 열람실 2. 실험·실습 및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있어서는 보건실·휴게실 및 체육시설(체육장)	제3조(학원의 설립) 학원은 교육환경과 보건위생을 위하여 적합한 장소에 <u>설립해야 한다.</u> 제4조(학원의 시설) 학원(원격교습학원은 제외한다)은 교습과정별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개별시설 가. 강의실: 학원에 설치하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예능분야, 정보분야 및 평생직업교육학원(국제화 및 인문사회·자연분야는 제외한다)은 별표 1에서 정한 경우만 설치한다. 나. 열람실: 교습과정이 독서 계열인 경우에만 설치한다. 다. 실험·실습실: 별표 1에서 정하는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만 설치한다. 라. 보건실, 휴게실 및 체육시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기숙학원”이라 한다)만 해당한다.	◦ (현행 제2조제1항) 설립 위치와 시설은 구분되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 다만 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재의 실익이 없어 삭제 권고. ◦ (현행 제2조제1항제1호~제6호) 법 제8조에서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표 및 2의 내용 참조하여 필요한 시설을 나누어 정리. 독서실의 경우 별표 1에서 강의실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열람실 외에 별도로 강의실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별표는 정비안과 같이 바뀐 조문의 위치에 따라 순서를 조정할 것을 전제하여 현재의 별표와 다르게 표기한 것으로, 정비안의 별표 1은 현행 별표 2를 지칭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4. 화장실·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6. 그 밖에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 학원에는 학습자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강당·회의실·사무실 2. 학습자료실·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통신시설 6. 보건위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7. 체육시설, 오락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제3조(단위시설의 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통시설 가. 급수시설 나. 화장실 다. 채광·조명·환기 시설 라. 냉·난방시설 마. 방음시설 바. 소방시설 ② 학원에는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를 갖추어두어야 한다. ③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무공간이나 상담공간, 휴게공간 등을 별도로 설치할수 있다. 제5조(학원의 시설 기준)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학원(기숙학원은 제외한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현행 제2조제1항제6호의 내용을 이동하여 규정. ◦ 현행 제2조제2항에 있는 개별 시설의 경우 설치가 강제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간단하게 정리함. ◦ (현행 제3조제1호~제6호) 각 호의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열람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로 좌석을 구분하거나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실험·실습실 :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5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중장비운전 교습과정은 30제곱미터당 1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급수시설 및 화장실 :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	1. 강의실 가. 강의실 면적은 30㎡ 이상 135㎡(교습과정이 보통교과계열인 경우로서 종합적인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85㎡) 이하여야 한다.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의실 안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1㎡당 수용인원은 1명 이하여야 한다. 2. 열람실 가. 열람실 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실 안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1㎡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여야 한다. 다. 좌석을 남녀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3. 실험·실습실 가. 실험·실습실 면적은 45㎡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1.5㎡당 수용인원이 1명(중장비운전 교습과정은 30㎡당 1명)이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수도법」에 따라 설치된 상수도를 통	◦ 현행 별표 1에서는 강의실 연면적을 교습과정별로 규정하면서 “60㎡, 90㎡ 이상, 별표 2와 같음”으로 정하고 있고, 별표 2에서 실습실 등의 연면적을 개별적으로 정하는 내용이 있는데 현행 제3조와 별표 1, 2와의 내용이 상이함. 별표와 제3조의 기준을 비교·검토하여 실제 적용할 면적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제3조에 따른 시설 기준 외에 별표 1을 두는 것은 실습실을 설치할 대상을 명시하는 것 외에는 내용상의 실익이 없어 보임.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 5.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 :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조(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④ 지하실은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해 물을 공급받거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먹는 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화장실: 별표 2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방음시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소방시설: 소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학원설립·운영자들은 교습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중 채광·조명·환기 및 냉·난방시설을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하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외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1.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 2. 지하실이 속한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전부 노출되어 있는 경우	- 정비안 별표 2는 현행 별표 8임. ◦ (정비안 제3조제2항) 현행 제3조제5호에서 이동하고 알기 쉽게 정비. - 정비안 별표 3은 현행 별표 9임. ◦ 현행 제4조4항에서 조문을 이동하고 알기 쉽게 각 호로 나누어 문장을 정비.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4조(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의 원칙에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습과정은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와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지하실은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삭제〉 〈삭제〉 ④ 실험·실습·실기 등(이하 “실험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학원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습과정은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와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조문 이동〉 제7조(기숙학원의 등록 기준) ①기숙학원은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	◦ 강의실 연면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제3조제1항 각 호의 내용과 불일치하여 삭제함. ◦ (현행 제2항) 제2조제1항제1호의 단서가 조례 개정으로 삭제되어 더 이상 해당 규정이 존재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별표 1은 현행 별표 2임. ◦ 약칭한 용어를 사용하고 의미가 명확해지도록 문장을 정비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한다. 다만, 방학 기간은 예외로 한다. ②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 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 인력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의 위치는 강의실과 같은 건물이거나 강의실이 속하여 있는 건물과 300미터 이내의 같은 경계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숙박시설은 남녀별로 구별되어야 하며,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숙박시설에는 소방 관계 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교습을 할 수 없다. ②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기숙학원은 다음 각 호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숙박시설은 학원과 동일한 건물에 설치하거나 건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되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2.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강의시설 및 숙박시설에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한 급수시설, 화장실, 방음시설, 소방시설을 갖추되, 급수시설 및 화장실은 수강생이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를 설치해야 한다. ③ 기숙학원설립·운영자는 강의시설 및 숙박시설의 채광·조명·환기 및 냉·난방시설을 별표3의 기	- 별표 4는 현행 별표 7임. - 별표 3은 현행 별표 9임.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하되, 남녀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 신 설 〉	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④ 기숙학원의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⑤ 기숙학원의 급식시설에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⑥ 기숙학원의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를 담당할 인력(이하 “생활지도사”라 한다)을 수강생의 성별로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⑦ 기숙학원 설치·운영자는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 현행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법상 특별히 이들의 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확인 사항으로 규정.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5조의2(원격교습학원의 등록기준)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삭제 〉	이 조례는 ○○도 관할 학원에 관한 사항이고 법 및 영에 따라 학원은 ○○도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할 것인 바, 현행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이 ○○도 관할 외의 등록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다른 지역에서 관할할 사항을 조례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삭제.
제6조(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인원)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제3조의 강의실 수용인원과 실험·실습실 수용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	제8조(실험등이 필요한 학원의 일시 수용 인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험등이 필요한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제3조의 강의실 수용인원과 실험·실습실 수용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므로 제명을 이에 맞게 수정함.
제7조(임시교습자 신고)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경우 교습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습소 임시교습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교습 개시 이전 일까지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	제9조(임시교습자 신고) ①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교습소에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경우 교습자는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이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교습소의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법상 특별히 이들의 채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u>하여야 한다.</u> 1. 사유별 진단서나 입증서류 1부 2. 자격증 사본이나 졸업증명서 1부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1부(아동·청소년 대상 교습소만 해당됨) ② <u>임시교습자의 교습기간은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u> 제8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① 영 제5조의2제1항 제5호와 영 제12조에 따라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 또는 통보하여야	<u>없는지 확인해야 한다.</u> ② <u>임시교습자를 둔 교습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습소 임시교습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교습 개시일 이전 까지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1. 진단서 등 임시교습자를 두게 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임시교습자의 교습소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이나 졸업증명서 1부 3.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범죄전력 조회서 1부 ③ <u>임시교습자의 교습기간은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교습자가 직접 교습할 수 없는 사유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유로 인해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u> 제10조(기숙학원 운영 기준) ① 기숙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사를 채용하거나 해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채용 또는 해임 사실을 관할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	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확인 사항으로 규정. ◦ 교습자가 직접 교습할 수 없는 사유에 따라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임시교습자의 교습기간으로 함. ◦ 법 제6조 및 영 제5조에 따르면 강사명단은 등록 및 변경등록의 대상이고 등록은 사전 등록을 의미하므로, 강사를 채용하거나 해임한 후 15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u>영양사와 생활지도 담당인력의</u> 채용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이고, 해임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1.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u>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1부(아동·청소년 대상 학원만 해당됨)</u> ③ 교육장은 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u>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사의</u> 채용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해임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채용통보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7조제7항에 따라 제출 받은 <u>범죄경력조회서 1부</u> ③ 교육장은 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것은 법에 반할 소지가 있어 보이나, 기숙학원의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은 등록 대상인 강사명단이나 시설·설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행 제8조의 내용을 한정적으로 명확히 규율하기 위하여 조문 내용을 정비안과 같이 수정함. ◦ 학교교과교습학원이고 대상 연령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 대상 학원으로 제한하는 의미가 없어 보임. ◦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별지 제2호 채용통보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할 것 검토.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9조 삭제 <2012. 5. 10.>	< 삭 제 >	
제10조(위탁업무의 지원) <u>주무관청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나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u>	제11조(위탁업무의 지원) <u>교육감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및 연수원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함.
제11조(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 <u>학원설립·운영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u>	< 삭 제 >	◦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해당 조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평생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 「평생교육법」에 따라야 할 것인바 해당 내용 삭제.
제1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u>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이나 공제사업 가입 등은 수강생 당 배상금액이 1억원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u> ② <u>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u>		◦ 제2조로 이동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u>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상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료실비(학원·교습소 내외 치료비 포함) 보상금액은 수강생 당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u> ③ <u>학원 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④ <u>제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이나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처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알맞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u> ⑤ <u>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나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원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u> 제13조(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 <u>자율적이고</u>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운영	제12조(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 <u>교육감은 자율적이고</u>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자율조직인지 교육감이 구성하는 조직인지 명확하지 않는데 교육감이 구성하는 조직임을 전제로 한 것임.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할 수 있다. 제14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u>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의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제외한다.</u> 제15조(행정처분) ①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원 :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2. 교습소 : 시정명령, 교습정지, 폐지 3. 개인과의교습자 : 시정명령, 교습정지, 교습중지 ② 행정처분은 위반 사항의 경중, 위반정도 및 반복위반 회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③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행정처분의 대상·기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u>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독서실은 제외한다), 교습소 또는 개인과의교습자의 교습시간은 5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u> 제14조(행정처분) ①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처분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함. ◦ 법 제17조제4항에서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괄적으로 규칙에 재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바,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해보임(조례에서 별표를 신설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규정할 것을 전제로 정비안 작성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삭제 〉	◦ 위임 규정이 별도로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법제처 2018. 3. 13. 의견제시 18-0025 참조) 해당 규정은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함.

2. ○○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조 례 명	지 자 체
〇〇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〇〇시

현 행	정비안	검토의견
〇〇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u>제1장 총칙</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〇〇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u>〈 삭 제 〉</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상위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장(章)’을 구분하고 있으나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법의 ‘장(章)’ 구분 체계에 따르고 있지 않고 내용상 ‘장(章)’ 구분의 실익도 없어 보이므로 삭제함.

현 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한다.	〈삭 제〉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은 그 자치법규의 전부 또는 여러 조항과 관련된 경우 총칙부분에 두는 것인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공동주택의 분쟁에 대해 제한 없이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 전체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공동주택 안전점검 요청(검토안 제2조) 등 필요한 부분에서 규정.
제2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업무의 위탁	〈삭 제〉	
제3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인(이하 “대표회의”라 한다)의 요청 있을 경우 법 제34조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제2조(안전점검 요청)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관리인등”이라 한다)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	현행 제2조 및 제3조의 내용을 통합하여 규정함.

현 행	정비안	검토의견
② 소규모 공동주택의 대표회의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5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거나 개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을	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공동주택(이하 “소규모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인등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30년이 지난 경우에만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삭 제 〉 〈 삭 제 〉	◦ (현행 제4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달리 조례로 규정할 필요 없음. ◦ (현행 제5조) 법 제71조에 ‘시·군·구에 지방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심의·조정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71조제2항제9호에 따라 이와 달리 심의·조정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현 행	정비안	검토의견
받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 분쟁 및 소송 중인 사항 2.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로 정하는 사항 및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		외에 심의 제외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삭 제 〉	◦ (현행 제6조) 「○○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동일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적용하면 됨.
제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되,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제3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① 법 제71조에 따라 ○○시에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	◦ (현행 제7조) 분쟁조정위원회는 단순 자문 위원회가 아니라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는 위원회로 위원장의 필요나 위원의 요구로 개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현 행	정비안	검토의견
<u>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u>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분쟁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을 고려하여 개최하는 것이 타당함(검토안 제4조제2항으로 충분).
<u>제15조(간사)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u>	③ ○○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위원회에 관한 규정 순서에 따라 현행 제15조를 이동하여 규정함(「2018 자치법규 입안 길잡이」 203쪽 참조).
<u>제3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	④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현행 제34조) 위원회 규정 관련 순서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이동하여 규정함.
<u>제9조(조정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제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개시) ① ○○시에서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법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u>	◦ (현행 제9조) 분쟁조정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관으로 보기 어렵고, 법 제74조 등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조정 필요성 판단 주체를 시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현 행	정비안	검토의견
② 시장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고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인)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	(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 절차를 개시(開始)해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조정을 신청한 자와 그 상대방(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조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많은 측면이 있음.

현 행	정비안	검토의견
자의 서면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제11조(의견의 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문서를 조사·열람하거나 참고인의 진술 등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참석요구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거부 및 종결)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 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조정 절차 진행 중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나 당	1. 분쟁조정 신청 철회 2. 분쟁 조정안 수락 〈삭 제〉 제5조(조정거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거부하거나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한 사건인 경우 2.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조정 절차 진행 중	◦ 「○○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함.

현 행	정비안	검토의견
<u>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u> 3. 신청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4조에 따른 조정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조정의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제1항의 내용 이동)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는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거부 및 종결통보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u> 3. 신청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었거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5. 제7조에 따른 조정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정 거부·종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 삭 제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종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조정 거부(종결) 통지서에 따라 당사자에게 조정 거부·종결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현행 제2항) 현행 제12조제1항 후단의 내용과 의미가 중복됨.

현 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12조(조정 효력) ① <u>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u> ② <u>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를 수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u> ③ <u>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u>	제6조(조정 효력) ① <u>제4조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u> ② <u>○○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u> 〈 삭 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193쪽에 따라 '서명·날인'을 '서명날인'으로 정비함. -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사자가 서명날인 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단서를 신설함. (현행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달리 규정할 필요 없음.
제14조(조정비용) <u>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u> 1. <u>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u>	제7조(비용 부담) <u>조정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u> 1. <u>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u>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194쪽

현 행	정비안	검토의견
2. <u>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u> 3. <u>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u> 제4장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원 제16조(지원 범위 및 대상) ①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단지를 제외한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안의 도로(보도 포함)의 보수, 주차장의 보수, 가로등의 보수·교체 2.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3. 어린이 놀이터 보수(어린이 놀이터는 노후 정도	2. <u>검사·조사에 드는 비용</u> 3. <u>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에 드는 비용</u> 4. <u>녹음, 속기록 작성 등 조정 절차에 드는 비용</u> < 삭 제 > 제8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관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u>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보도·주차장 보수 및 가로등 유지·보수비</u> 2. <u>상수도·하수도(공동주택단지 안 도로에 매설된 시설을 포함한다) 준설 및 유지·보수비</u> 3. <u>어린이 놀이터 보수비</u>	에 따라 정비 대상 용어 “소요되는”를 “드는, 필요한” 순화용어로 정비함. ◦ (현행 제3호) ‘그 밖의’를 삭제하여 자연스럽게 문장을 정비함. ◦ (현행 제16조제1항)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단지’규정은 현행 제2조의 적용 범위와 달리하고 있는바, 확인이 필요함. - 현행 제1항 후단의 내용과 각 호의 내용은 검토안 제8조제2항으로 이동하여 규정함. ◦ (현행 제3호) 괄호 안의 내용은 관리비용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를 확인하여 보수 및 교체하되,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시설물이나 재질로 변경할 수 있다) 4. <u>경로당의 보수</u> 5. <u>공동주택의 옥상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u> 6. <u>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공사(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한다)</u> 7. <u>외벽의 보수·보강(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한다)</u> 8. 그 밖에 <u>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u>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각 호 내용 이동) 2. <u>경로당 보수: 사업비의 100분의 80 이하</u> 1. <u>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시설물: 사업비의 100분의 70 이하</u> 3. <u>주상복합건축물: 전체 사업비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건축 연면적 비율을 곱한 사업비의</u>	4. <u>경로당 보수비</u> 5. <u>공동주택 누수 발생 시 옥상 방수 공사비</u> 6. <u>소규모공동주택 외벽 도색 및 보수·보강 공사비</u> 7. 그 밖에 <u>공동시설 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u>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되, 공동주택단지 당 최대 8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1. 제1항제4호의 비용: 해당 비용의 100분의 80 이하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 해당 비용의 100분의 70 이하 ③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든 비용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연면적 비율을 곱	지원과 무관하므로 별도로 규정함(검토안 제9조제3항 후단). ◦ 현행 제7호의 내용과 통합해 규정함. ◦ 현행 제16조제1항의 후단 내용을 항으로 구성하여 규정함. ◦ 검토안 제2항의 내용과 구분되어 ‘호’를 ‘항’으로 규정함.

현 행	정비안	검토의견
100분의 70 이하 제17조(지원 신청 및 교부결정) ① 보조금을 교부받 고자 하는 자는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하 “대표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 쳐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신 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신청 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사업비의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조(관리비용 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8조에 따라 관리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 회의 또는 관리단의 의결을 거친 후 별지 제6호서 식의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의결서 사본 2.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 받은 시장 은 제10조에 따른 ○○시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비용 지원 여부를 결 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비용 지원 여부를 결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을 조사할 수 있으 며,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어린이 놀이터 보수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 리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별지 제6호서식에 규정되어 있는 첨부 서류 를 ‘호’로 신설하여 규정함. ◦ 현행 제2항을 두 개의 항으로 구분하여 정 비함. ◦ 현행 제16조제2항제3호 괄호 안 내용을 이 동하여 규정함.

현 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16조(지원 범위 및 대상) ③ 이미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 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나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 받은 해로부터 5년이 지나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받은 연도부터 3년(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5년을 말한다)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관련 법령 적합 여부 2. 보조금 지원순위 결정 3. 보조금 교부대상 단지 결정 4. 보조금 지원여부 및 규모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동주택 관리계획의 적법성 및 적정성 2. 관리비용 지원 대상 및 지원액 결정 3.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내용을 통합하여 규정함.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제1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현 행	정비안	검토의견
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되, 공동주택업무담당 부서의 장, 정책기획관, 도시계획과장, 에코(Eco)-물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책기획관, 공동주택 업무를 담당 부서의 과장, 도시계획과장, 맑은물사업 본부에서 하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〇〇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현행 제3항)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조례에서 특정될 수 있는 범위로 수정하여 명시하고, 위촉할 각 호의 사람이 누락되어 위촉할 위원을 명시함.
제20조(위원의 임기)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음(『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9쪽 참조).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	〈 삭 제 〉	◦ (현행 제21조) 「〇〇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동일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적용하면 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무를 대행한다. 제22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u>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u> 개최한다. ② <u>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u>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u>위원장은 의안의 신속성에 따라 서면으로</u>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u>각 위원회 운영 등에</u> 필요한 사항은 <u>각 위원회의 의결</u>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제23조(감사 대상) ① 시장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법 제93조에 따라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제1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u>심의위원회의 회의는</u>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u>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u>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u>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u>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삭 제 〉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심의위원회 운영에</u> 필요한 사항은 <u>심의위원회의 의결</u>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삭 제 〉 〈 삭 제 〉	• 회의의 소집권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함. • (현행 제3항) 「○○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동일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 • 위원회 규정 관련 순서에 따라 현행 제34조 내용을 이동하여 규정함. • (현행 제1항) 법 제93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현 행	정비안	검토의견
수 있다. 제26조(감사요청) 입주자등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선임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실시 결정) 시장은 감사요청을 받은 경우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감사실시) ① 시장은 수립된 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	제1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 및 실시) ①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법 제93조에 따라 시장에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을 받은 시장은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사를 신청한 공동주택 입주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주요 내용을 감사를 신청한 입자주등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와 감사가 신청된 공동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를 감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 외에 감사 대상에 대해 조례로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그 범위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제한할 수는 없음. ◦ 법 제9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삭제함.

현 행	정비안	검토의견
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29조(사전조사)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감사 대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새로 발견되거나 누락된 사항은 제	주택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장(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하게 감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통보할 경우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를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해야 한다. ⑤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감사의 거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다른 기관에서 감사·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현 행	정비안	검토의견
외한다. 3. 해당 감사 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감사반 구성·운영)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 마다 다음과 같이 ○○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1. 감사반장: 1명 2. 감사반원: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감사관 제24조(전문감사관 위촉·운영) ①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0명 이내의 ○○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이하 “전문감사관”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감사요청서에 감사 요청 사유가 명확히 적어져 있지 않거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감사반 운영) ① 시장은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사를 위한 감사반을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건축사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21쪽에 따라 ‘기재하다’를 ‘적다’로 바꿔 씀. ◦ 현행 제24조의 내용을 통합하여 규정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5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 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31조(감사결과 보고 등) ① 감사반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서를 대표	4. 기술사 5. 주택관리사 6. 주택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삭제 〉 ② 시장은 감사반 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전문가를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된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사결과 보고) ①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감사반은 감사가 끝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93조제7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 (현행 제3호) 의미상 검토안 제6호의 내용에 포함됨으로 삭제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190쪽에 따라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정비함. ◦ (현행 제25조 후단) 감사관에게 수당 및 여비 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함. ◦ 현행 제2항을 2개의 항으로 구분하여 정비함.

현 행	정비안	검토의견
자와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관리주체의 소명이 있을 경우 대표자에게 소명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비밀보호) 시장은 대표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때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표자와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대표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관리주체등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등이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현행 제32조) 검토안 제16조 제2항의 후단으로 이동하여 규정함. ◦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바, 해당 내용은 '준용'의 표현은 적정하지 않음(『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87쪽). ◦ 지자체의 규칙은 위임 규정이 별도로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실익이 없어 삭제함(법제처 2018. 3. 13. 의견제시 18-0025 참조).

3. 부산광역시 ○○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 례 명	지 자 체
부산광역시 ○○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구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부산광역시 ○○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u>제1장 총 칙</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	부산광역시 ○○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u>〈 삭 제 〉</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통상 조문 수가 30조 이상이 되는 경우에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장(章)으로 나누어 규정할 수 있으나, 이 조례의 경우 조문 수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장을 나누어 규정할 실익이 없어 보이므로 검토안에서는 장 구분을 삭제함. ◦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므로 목적규정을 간략히 수정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u>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청소년</u>”이란 「<u>청소년 기본법</u>」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u>학교 밖 청소년</u>”이란 「<u>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u>대안교육</u>”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 위주의 교육과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학·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4. “<u>대안교육기관</u>”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u>초·중등교육법</u>」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대안교육</u>”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u>대안교육기관</u>”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u>초·중등교육법</u>」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대안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을 말한다.	◦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한 조례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용어정의를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령에서 용어정의를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다시 용어정의를 하지 않음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83). ◦ (현행 제3호) 「<u>초·중등교육법</u>」 제60조의3 제1항을 참조하여 정비함. ◦ 현행 제4호에서는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의 의미를 「<u>초·중등교육법</u>」에 따른 학교로 본다면 “대안교육기관”은 “사립 대안학교”를 제외한 “국·공립 대안학교”만을 의미함. 그러나 이는 현행 제11조의 취지에 비추어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u>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u> 제2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 삭제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u>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 삭제 〉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대안교육기관을 대안학교가 아닌 기관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규정하려는 취지라면 검토안과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5호) 현행 제12조에서 한번 사용되는 용어로서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규정에서 상세히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삭제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는 “학교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u>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u> <u>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1. <u>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u> 2. <u>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u> 3. <u>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u> 4. <u>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u> 5. <u>그 밖에 ○○구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u> <u>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구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교 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u>	<u>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업 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u>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제1항 및 제2항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의무 및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재기재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함. ◦ 표현 수정.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 4.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5. 법 제11조에 따른 자립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사업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함.
제3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 삭 제 〉	
제6조(설치)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부산광역시 ○○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부산광역시 ○○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구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현행 제6조에서는 부산광역시 ○○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산광역시 ○○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부산광역시 ○○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가 아닌 “대행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부산광역시 ○○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라는 가상의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둘 실익은 없는바, 검토안과 같이 수정하면서 「부산광역시 ○○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제3조를 함께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법제처 2020. 8. 26. 의견제시 20-0181 참조). ◦ 법 제7조제1항제4호를 참조하여 수정함.
제4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삭 제〉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구에 부산광역시 ○○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동일한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할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관리 4.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 5.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제공·관리 7.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정부 부처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 지원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업		실익이 없음. 다만, ○○구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정”하지 않고 구청장이 반드시 설치할 의도라면 검토안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삭제 〉	◦ 지원센터는 그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로 보이는바(「청소년 기본법」 제17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2호,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 참조),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10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삭제 〉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위탁 운영의 근거를 조례에 재기재할 실익은 없어 삭제함.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공유재산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2조, 「부산광역시 ○○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반환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기재의 실익이 없어 삭제함. ◦ 보조금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당연히 해당 조례가 적용되므로 후단은 삭제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12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후원인 제도 운영) 구청장은 공공기관, 청소년 지원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을 학교 밖 청소년의 후원인으로 지정하는 후원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삭제 〉	◦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는 다른 내용임으로 명칭을 “후견인”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검토안에서는 “후원인”으로 규정하였으나 정책 취지에 따라 적절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조례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연히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바, 규칙 등 규정 형식을 특정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함.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4. 서울특별시 ○○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 례 명	지 자 체
서울특별시 ○○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구 자율방범대 <u>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구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동에서 방법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법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	서울특별시 ○○구 자율방범대 <u>지원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사회의 치안 유지를 위해 구성·운영되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율방범대”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u>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u>	◦ 이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직접 자율방범대를 설치한다는 내용은 없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경우 그 자율방범대의 지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을 정비함. ◦ 조례의 목적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정비함. ◦ 정의하는 용어가 하나인 경우 ‘이 조례에서 “○○”이란 ~을 말한다.’로 표현하고, 정의 조항에서는 약칭하지 않음(「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86, p.385).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직을 말한다. (제4조에서 이동)	1. <u>보안 취약지역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 신고</u> 2. <u>아동·청소년 선도</u> 3. 「<u>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및 그 밖의 가출인 보호 4. <u>교통 및 기초 질서 지도</u> 5. <u>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u> 6. <u>그 밖에 주민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 (검토안 제3호 관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참고하여 정비함(검토 후 범위 조정 가능). ◦ (검토안 제4호 관련) ‘계도’는 ‘지도’로 정비(「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2020, 제9판, p.170)함.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방법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방법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이하 “방법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동별 방법대원의 주거지 및 사업장 소재지는 소속 방법대의 신고지에 해당됨을 원칙으로 한다.	〈삭 제〉	◦ 자율방법대원의 자격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보장된 자율방법대의 조직·구성·활동 등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법제처 2017. 11. 9. 의견제시 17-0290, 법제처 2015. 10. 7. 의견제시 15-0263 참조)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현 행	정비안	검토의견
		함(현행 조례 제4조 및 제5조도 자율방범대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정비함). ※ 법제처 2017. 11. 9. 의견제시 17-0290 공익활동을 추구하는 자율방범대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보면,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党性), 비종파성(非宗党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제2조제2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할 때에는 자발성과 공익성 등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러한 원칙은 국가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6조(신고 등) ① 방법대를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율방법대 설립 신고서(이하“신고서”라 한다)를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방법대의 등록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방법대는 활동범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율방법대는 별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지원행위를 할 때 적용되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조례 등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에도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1. 26. 의견제시 17-0027 참조). 살피건대, 서대문구조례안 제4조제3항에서는 자율방법대원을 해당 등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자원봉사단체인 자율방법대의 구성은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법대원의 가입 자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서 자율방법대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조문 이동) 이 조례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율방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을 총칙규정[제2조(정의)] 다음에 두는 것이 내용상 자연스러움.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방법대의 대표자는 방법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임무) ① 방법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 예방·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활동	제1호서식의 자율방범대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율방범대원 명단 2. 자율방범대 운영 계획 3.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③ 구청장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등록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대상으로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고, 지원 대상으로 결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자율방범대의 대장은 자율방범대가 해산되거나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등록한 자율방범대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2조로 이동)	◦ (제1항 관련) 자율방범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청장의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하도록 등록 이유를 명확히 밝힘. 또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정비하고, 그 밖에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정비(「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2020, 제9판, p.227)하며, ‘별지 제0호 서식’은 ‘별지 제0호서식’으로 정비(「법령입안·심사기준」, 2019. 12, p.670)함. ◦ (제2항 관련) 등록증 발급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주민 조직의 설립이라는 표현은 어색하므로 “설립 등록증”을 “등록증”으로 변경하며, ‘교부’를 ‘발급’으로 정비함(「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2020, 제9판, p. 11)(별지 제2호서식의 명칭을 “자율방범대 등록증”으로 변경 필요). ◦ 현행 제4조의 경우 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임무(활동)를 강제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므로, 검토안 제2조와 같이 구청장이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② 방법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삭 제〉	지원하려는 자율방법대의 일반적인 성격 정도로 정리함.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방법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복장 및 장비 구입비	제4조(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자율방법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율방법대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법대원 복장 및 장비 구입비	◦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제32조의4부터 제32조의8까지) 내에서 자율방법대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 것임. 특히, 현행 제4조제2항의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증거 자료 보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제5항에서 규정(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5년 동안 보관 등)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등록 신청에 이어 등록된 자율방법대의 예산 지원의 내용이 오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현행 제7조를 검토한 제4조로 이동하여 규정함. 한편, 이러한 예산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에 해당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2.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 3. 제9조에 따른 <u>범죄예방 및 치안 교육경비</u> 4. 그 밖에 구청장이 <u>방법대의</u>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2.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 3. 제8조에 따른 <u>자율방법대원 교육에 드는 비용</u> 4. 그 밖에 구청장이 <u>자율방법대의</u>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하므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이 필요한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명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지원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임(법제처 2016. 9. 20. 의견제시 16-0243 참조).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자율방법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복장 및 장비 구입비, 식비 등이 운영비에 해당하는지 판단[「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별표 12)에 따른 일반운영비 내역 등을 참고]하여 내용 수정 필요(법제처 2015. 3. 11. 의견제시 15-0047 참조).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②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관할 경찰서와 방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방법대로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은 방법대원이 제4조의 임무수행시에만 사용하고 방법대장은 이를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삭 제〉	◦ 이 조례에서 자율방법대는 지원을 전제로 구청장에게 등록하는 것인데 1년 이상 지속적인 실적이 없다고 하여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자율방법대 지원)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활동이 미비한 경우 등의 사유로 지원내용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는 현행 제3항에 따라 가능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 등이 적용되므로 이 조례와 같이 지원금의 사용 방법 및 지도·감독 규정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방법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법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② 구청장은 자율방법대원의 구성 현황 및 전년도 방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로 이동)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방법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법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활동범위) 각 방법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지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에서 이동)	제5조(활동범위) 구청장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율방법대가 제3조에 따른 등록 시 정한 지역 외에 다른 지역까지 순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지급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방법대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 이상 방법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자율방법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법대에 대한 예산	◦ 자율방법대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 시 제출한 활동범위(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를 넘어 순찰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구청장이 자율방법대에 요청하도록 정비함. ◦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되나, 해당 조례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주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규정하되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문안을 정비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u>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u> <u>② 구청장은 방법일지 작성 및 활동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u>	<u>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u> 〈삭 제〉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 업의 수행 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현지 조사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법제처 2019. 4. 19. 의견제시 19-0119), 이 조례에서는 방법대장 등에게 방법일지 작성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를 점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계상 부적절하므로 현행 제8조의 지도·감독의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u>제9조(교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법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법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u>	<u>제7조(자율방법대원의 교육)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법대원의 방법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u>	◦ ‘하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될 경우 ‘실시’를 생략(「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2020, 제9판, p.135)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10조(표창) 구청장은 <u>방법활동</u> 실적이 우수하고 구청발전에 기여한 <u>방법대</u> 및 <u>모범대원</u> 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u>방법활동</u> 의 실적이 우수하고 <u>지역사회</u> 의 치안유지에 기여한 <u>자율방법대</u> 및 <u>모 범 자율방법대원</u> 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 표 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 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 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바, 해당 내용은 「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 리 조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므로 ‘준 용’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2018 자치법 규 입안 길라잡이」, 2018, p.387). 또한, 상위법령(또는 조례)과 관련된 내용이 조례 에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여부는 그 내용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일괄 적으로 상위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정 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상위법령이 적용 되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 람직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위임의 경우 개별·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하고, 위임 규정이 별도로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법제처 2018. 3. 13. 의견제시 18-0025 참조), 해당 규정은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5. 서울특별시 ○○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조례명	지자체
서울특별시 ○○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서울특별시 ○○구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구 환경오염행위 <u>신고포상</u>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u>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u>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u>포상금 등 지급</u>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u>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u>를 서울특별시 ○○구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환경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행위 신고) ① 누구든지 서울특별시 ○○구 행정구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	◦ “포상”의 의미는 상을 준다는 의미로 그 내용이 광범위 하여 조례 내용에 맞게 포상금으로 제명을 정비함. ◦ (현행 제2조) 조례 자체의 적용범위 보다는 신고 대상에 해당되므로 현행 제3조와 통합하여 규정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3조(신고)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FAX·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위(이하 “환경오염행위”라 한다)를 직접 목격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우리말 표기 방법에 따라 정비함.
제5조(접수 및 처리) 구청장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오염행위 신고의 처리)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접수 및 처리대장으로 생각하고 “신고·접수”의 가운데뺄점을 생략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176쪽)에 따라 정비 대상 용어 “기재하다”를 순화 용어 “기록하다”로 정비함. ◦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민원처리법 제2조제1호가목의 기타 민원에 해당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면 되므로 관련 법령을 명시할 필요는 없음.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신고 내용만으로 환경오염행위 입증이 곤란한 경우 신고자에게 증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서울특별시 및 각 자치구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제4조(포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고 내용이 환경오염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 한 경우 2. 서울특별시 및 각 자치구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신고한 경우 3.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4. 신고자와 피신고자 간에 직접적인 분쟁이 있는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190쪽)에 따라 정비 대상 용어 “범위 안에서”를 순화 용어 “범위에서”로 정비함. ◦ 띄어쓰기를 정비함. ◦ 괄호 안을 풀어서 정비함. ◦ 띄어쓰기를 정비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229쪽)에 따라 정비 대상 용어 “허위”를 순화 용어 “거짓”으로 정비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u>조치된 사항에 대하여</u>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② <u>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u> ③ <u>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u> ④ <u>같은 날(00:00 ~ 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u> 〈신설〉	5.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u>처리된 사항</u>을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u>지급된</u> 경우 ② <u>포상금은 1명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u> ③ <u>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환경오염행위를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u> ④ <u>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 기준이 중복된 경우에는 포상금이 가장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u> 제5조(상품권 등 지급) <u>구청장은 신고 내용이 환경오염행위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훼손 등과 관련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명당 연간 지급액은 10만원으로 한다.</u>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32쪽)에 따라 “~에 대하여”를 “~를”로 정비함. ◦ (현행 제2항) 포상금 지급 관련은 정비안 제4조제1항의 내용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물품 지급에 대하여는 정비안 제5조에 규정함. ◦ 별표 내용 중 환경오염행위로 인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별개의 내용을 본문으로 이동하여 규정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7조(처리결과와 통지) 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신고한 내용이 포상금품 지급대상일 경우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통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6호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포상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처리 결과 통지)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고 처리 결과 및 포상금 등 지급 여부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사항이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 현행 제7조 후단의 내용은 내부적인 사항으로 달리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함.
제8조(신고포상금품의 지급) 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전화카드·기념품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등의 지급 방법) ① 구청장은 환경오염 행위를 한 사람에게 행정처분 등의 처분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신고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상품권 등은 신고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전달한다.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9조(포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 및 포상금 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간사, 청소업무 담당과장, 환경업무 담당과장, 공원녹지 담당과장, 하수업무 담당과장 등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1.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3. 공원녹지를 담당하는 부서 4. 하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현행 제4항 후단의 간사 관련 규정은 운영회의 운영과 관련 순서에 따라 정비안 제11조에 규정함(「2018 자치법규 입안길잡이」 203쪽 참조). - 회의록 비치 관련 내용은 정비안 제10조 제5항으로 이동하여 규정함. ◦ 간사는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므로 위원이 될 수 없음.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2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자,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청하거나 관련기관에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 내용과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위원회 회의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고자, 참고인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별표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액이 명확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 포상금 지급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 현행 제3항의 후단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에 맞게 정비함(「2018 자치법규 입안길잡이」 214쪽 참조). ※ '재적위원 2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는 의결정족수만 규정할 경우 사용됨. ◦ 현행 제9조제4항의 후단 내용 일부를 항으로 구성하여 규정함. - 위원회에서 사용할 포상금 결정서의 경우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신 설〉 제10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 교부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신고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2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삭 제〉	◦ 현행 제9조제4항의 후단 내용을 조항으로 구성하여 규정함. ◦ 간결하게 표현함. ◦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 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함으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함. ※ 특정수입으로 특정 지출을 연계하는 경우는 특별회계에서 가능함.

2021년 알기 쉬운
**조례만들기 지원
사례집**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ttp://www.moleg.go.kr>

Ⅲ 보건·복지 분야



1. ○○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조 례 명	지 자 체
○○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군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u>○○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및「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및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u>○○군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행복택시 운영 및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취약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주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	조례 내용에 맞도록 제목을 수정함 ◦ 「지방자치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현행조례의 직접적인 위임근거 조문이 없으므로 이를 정비함. ◦ 현행 조례에서 많이 쓰이는 농어촌버스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군 관내 택시를 말한다.	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군 관내 지역 주민 등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로서 이용요금의 일부를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이란 ○○군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중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제3조(행복택시 운행지역) ① 군수는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을 선정한다.	◦ 현행 조례 제2조제2호는 행복택시 운행지역의 지정에 관한 것이며, 정의로 규정하기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정비안 제3조)하여 규정함.
제8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지역에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는 등 교통 여건이 개선된 경우에는 행복택시 운행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 현행 조례 제8조제1호의 내용은 행복택시 운행 필요성이 없어진 마을을 행복택시 운행 지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므로, 관련 조문인 정비안 제3조에 규정함.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제3조(행복택시 운행방법) ① 탑승 대상은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거주 주민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	제4조(행복택시 이용 대상) ① 행복택시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의 내용을 행복택시 이용대상과 우선순위 등으로 분리하여 구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u>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u> ② 행복택시 운행은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③ 행복택시 운행 횟수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되, 예산편성 범위, 이용실적, 마을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있다. ② 행복택시의 이용 수요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인 주민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5조(행복택시 운영) ① 행복택시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운행하되, 군수는 이용실적이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복택시 운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행복택시는 제1항에서 정한 횟수의 범위 내에서 마을 주민들의 사전 요청에 따라 규칙에서 정하는 구간을 운행한다.	체적으로 규정함. ◦ 현행 조례 제3조제2항과 제3조제3항은 행복택시 운행방법·운행횟수 등의 내용이며, 조문의 통일성을 위하여 정비안 제5조에서 규정함. ◦ 행복택시는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정해진 구간을 운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맞춰 현행 조례 제3조제2항의 조문 내용을 수정함. ◦ 현행 조례 제4조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통합하여 규정함.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①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중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군수는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행복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	제6조(행복택시 비용 지원) 군수는 행복택시 이용자가 택시 운행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 중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 신 설 〉 제5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당월 이용한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일지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운행여부를 확인 한 후 같은 달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운행일지 작성) 행복택시를 운행한 자는 행복택시를 운행할 때마다 별지 제1호 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일지(이하 “운행일지”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제8조(운행비용 지원 신청) ① 행복택시를 운행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운행일지를 첨부하여 매월 10일까지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지난 달 행복택시 운행비용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운행여부를 확인하여 같은 달 20일까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완 요청에 따라야 한다.	◦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의 내용 중 운행일지 작성은 운행비용 지원 신청과 별개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므로 정비안 제7조를 신설하여 별도 조문으로 구성함. ◦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의 내용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별도의 조항으로 구성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③ 군수는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 보완 요구로 지원신청이 늦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운행비용 지급) 제8조에 따라 운행비용의 지원을 신청 받은 군수는 운행비용 지원신청 내역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운행비용을 매월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일정을 늦출 수 있다.	◦ 현행 조례 제5조제3항은 운행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며, 조문의 통일성을 위해 정비안 제9조로 이동하여 규정함.
제6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 삭제 〉	◦ 운행비용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승객에게 받지 않은 금액의 사후적 정산에 해당하므로 사후적으로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 지급 여부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당초 운행횟수를 정할 때 예산을 고려하여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신청된 것이라면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제10조(자료제출) 군수는 행복택시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복택시 운행지역 마을의 이장이나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행복택시 이용 및 운행	◦ 조문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u>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u>	
<u>제8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u>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u>	〈 삭제 〉	◦ 현행 조례 제8조제2호의 경우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에 재기재할 실익이 없음.
<u>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 삭제 〉	◦ 지자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규정이 별도로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고, 지자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자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법제처 2018. 3. 13. 의견제시 18-0025 참조)이므로, 해당 규정은 규정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를 권고함.

2. ○○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 례 명	지 자 체
○○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군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을 저하로 인한 ○○군의 인구감소 현상과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부모 등을 대상으로 출산 및 양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과 관련하여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군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삭 제 〉	◦ 조례에 포함된 내용에 맞게 제명을 수정함.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기재(출산을 저하→ 저출산, 노령화→고령화). ◦ 제1호 출산장려금, 제3호 양육비, 제4호 출산축하금, 제5호 지원대상자의 경우 지원 대상이나 지원 범위에서 설명되는 내용으로 별도로 정의할 필요 없어 보임.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2. "셋째이후 영유아"란 가족관계등록부 내의 셋째이후 영유아를 말한다. 다만, 부부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영유아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일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내의 영유아로 본다. 3.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이하 "양육비"라 한다)란 ○○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이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매월 지원해 주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이하 "출산축하금"이라 한다)이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을 지급해 주는 금액을 말한다. 5. "지원대상자"란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 자녀의 출생 순위 결정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액 결정과 관련하여 셋째 이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도 판단기준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셋째 이후 영유아" 정의 대신 "지원 대상 자녀 판단기준"에 대하여 별도 조문으로 구성함.
제3조(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군에 신생아 출생 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신생아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등록한 자녀(이하 "지	◦ 지원 내용별로 출산장려금(현행 제3조제1항), 양육비(제3조제2항), 출산축하금(제3조제3항)의 내용을 각각의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출산장려금(제3조제1항)의 내용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출생일을 기준으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 이 되며,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등 록이 함께 되어 있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한다.	원대상자녀"라 한다)를 둔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출산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자녀 의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할 때까지 1년 이상 계속하 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③ 출산장려금은 지원대상자녀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 원대상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 제로 지원대상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하 "보호 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을 각 항으로 나누어 이해하기 쉽게 규정함. ◦ 해당 군 확인 결과 자녀 출산 전부터 출산장 려금 지원 신청 시까지 1년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 대상으로 하려는 취지라고 하므로 이에 맞게 본문과 단서 내용을 통합하여 규정함.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출산장려금 지원액 은 신생아 1인당 예산의 범위내에서 첫째아 500 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 아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3,000만원 이내 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생아가 쌍둥이 이상일 경 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태아별로 지원한다. 단,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부와 모	제3조(출산장려금 지원액) 군수는 별표 1에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제2조제3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에게 지급 하되,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 라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 지원금의 구체적인 액수 및 내용은 별표에 서 규정함. - 현행 별표 2를 별표 1로 수정. ◦ 현행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은 자녀의 인 정 기준에 관한 것으로 "셋째 이후 영유아"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제3조(지원기준) ② 양육비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이후의 영유아로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연령의 아동을 둔 부 또는 모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② 양육비의 지원 기준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영유아 1인당 월 10만원으로 하고, 신청한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 영유아 또는 그 보호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한다. 다만, 영유아의 전입·전출로 지원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의 출생 후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양육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영유아가 출생 후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제4조(양육비 지원 대상)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양육비 지원액) ① 제4조에 따른 양육비는 보호자가 양육비 지원을 신청한 달부터 셋째이상 자녀가 만 6세가 되기 전까지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전입이나 전출 등의 사유로 양육비 지원 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셋째 이상 자녀를 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양육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에 대한 정의(현행 제2조제2호) 내용과 함께 별도 조문(제12조)으로 규정함. ◦ 양육비 지원 조항을 별도 규정함. ◦ 현행 제3조제1항에서 출산장려금을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같은 조 제2항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행 제5조제5항에서는 양육비에 대해 보호자가 지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히 지급 신청만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않는 점을 고려하여 양육비의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2020, 제9판, 209쪽)에 따라 정비함.(일할 → 일 단위)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u>이내에 양육비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양육비를 지급한다.</u> 제5조(지원신청) ① 삭제 ② 읍장·면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전입신고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양육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u>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u> ③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이 모두 사망 등의 사유로 영유아를 양육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유아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단체를 포함한다)	제6조(지원 안내)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에 따라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읍장·면장은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 양육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u>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양육비 지원에 관한 내용과 그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u> 제7조(지원 신청) ① 출산장려금 또는 양육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장·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출산장려금은 지원대상자녀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삭제〉	◦ 조례에서 규칙의 내용을 인용할 수 없는바, 현재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을 조례로 상향 조정 필요함. - 만약 규칙에 그대로 두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규정 가능 ① 출산장려금 또는 양육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 관할 읍장·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출산장려금 또는 양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장·면장은 신청서 접수처리 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지원대상 명부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의료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보건의료원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명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별표 2에 따라 신생아 보호자의 은행계좌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④ 읍장·면장은 신청서 접수처리 시 양육비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 전산망 자료 등을 이용하여 다음 사항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 다음달 5일까지 신청서를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셋째이후 영유아 여부 2.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3. 신청인 적격 여부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장·면장은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신청서와 지원신청 대상 명부(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받은 군수는 신청서등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산장려금 또는 양육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보호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신청 권한에 대해 규정할 필요 없으므로 삭제함. ◦ 출산장려금의 경우 지급 주체를 보건의료원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업무의 위임 관계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군수로 통일하여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지급 절차를 통합하여 규정함.(이하 동일) - 위임 사무의 통합 관리를 위하여 사무 위임에 관한 일반조례에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조례에서 실제 사무 담당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할 수도 있는바, 이 경우 별도 조문으로 구성할 필요 있음. 제13조(권한위임)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보건의료원장에게 위임한다. 1. 제7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업무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⑥ 군수는 양육비를 매월 25일에 대상자가 신청한 은행계좌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① 보건의료원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지급시기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월 양육비 지원 시 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전출 등으로 군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③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④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1회 50만원으로 지원한다.	⑤ 군수는 매월 일정한 날짜에 양육비 지원 대상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8조(지원 중단) ① 군수는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대상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의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를 지급할 때마다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9조(출산축하금 지원) 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5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지급 날짜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면 충분할 것임. ◦ 출산축하금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여 규정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3조(지원기준) ③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로 한다.	② 출산축하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현행 제5조제6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함.
제5조(지원신청) ⑥ 출산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장의 범위 등) ⑤ 신생아 출산가정에 의료비, 출산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출산가정 지원) 군수는 임산부와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대장 등 비치) ① 읍장·면장은 다음 각 호의 명부와 현황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명부(별지 제1호서식) 2.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 현황(별지 제4호서식) ② 군수 및 보건의료원장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 등 비치) ① 읍장·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 명부를 갖추어 놓고 신청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고	◦ 정비안의 내용에 맞게 현행 별표 및 별지 서식 번호 정비 필요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2020, 제9판, 190쪽)에 따라 정비함(비치하다 → 갖추어 놓다).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1.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별지 제2호서식) 2.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3.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4.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현황(별지 제7호서식) 제7조(지원중단) ③ 군수는 양육비 지원을 중단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현황의 비고란에 중지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단, 재혼가정(법적 부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제8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또는 양육비 지원을 중단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1. 출산장려금 지원: 별지 제4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2. 양육비 지원: 별지 제5호서식의 양육비 지원 현황 〈 삭제 〉 3. 출산축하금 지원: 별지 제6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 현황 제12조(지원 대상 자녀 판단 기준)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액 산정을 위한 자녀의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 현행 제7조제3항의 내용 일부를 포함하여 규정함. ◦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서는 신청인이 작성하는 서식으로 군수가 직접 작성·관리하는 서식이 아니므로 삭제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결정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부부(夫婦) 사이에서 출생하지 않은 자녀로서 부부 중 한명을 부 또는 모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자녀의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한 부부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실제 양육하고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제 〉	◦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법제처 2018. 3. 13. 의견제시 18-0025 참조) 해당 규정은 실익이 없는 규정이기예 삭제함.

3.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명	지자체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시민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u>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u>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와 지역경제 안정에</u>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에 따라 충청남도 ○○시의 시민 건강에 <u>위해(危害)</u>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u>그 예방과 관리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u>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 법령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므로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단순히 재기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법령 재기재 사항을 삭제함. - 집행조례인 것을 고려하여 표현을 수정함. - 집행조례는 상위 법령의 정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므로 현행 정의 규정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한다) 제2조에 규정되어 있어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함.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삭제 〉	◦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조제2항의 내용과 같아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함.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 삭제 〉	◦ 법 제4조제2항과 동일한 규정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 삭제 〉 〈 삭제 〉 〈 삭제 〉	◦ 법 제4조제3항과 동일한 규정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함. ◦ 법 제4조제4항과 동일한 규정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함. ◦ 법 제5조와 동일한 규정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함.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시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② ○○시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 및 시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삭제 〉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민이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의 의사증으로 인해 격리치료를 받은경우에 시장은 격리입원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제1군감염병 2.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 3. 제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 4. 제4군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5.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6. 생물테러감염병	〈 삭제 〉 제2조(비용지원) 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의심자에게 격리·치료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받은 자에 대한 입원비는 시장이 지원한다.	◦ 법 제6조와 동일한 규정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함. ◦ 현행 제4항 각 호의 감염병 종류는 법 제42조의 개정 전(법률 제9847호) 각 호의 전염병과 같으므로 현행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전염병으로 대체하고(전염병의 종류는 별도로 검토 필요),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고려하여 “권유할 수 있다”고 표현함. ◦ 법 제65조는 법 제42조에 따라 드는 경비를 시·도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의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적시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7. 기타 역학조사관이 유행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감염병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생활유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방안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간 공유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	〈 삭제 〉	◦ 현행 제6조 본문의 시행계획 수립의 의무는 법에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역시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함. ◦ 법 제7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함. ◦ 법 제7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① 시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삭제 〉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함.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함.
제8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업무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염병 비상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업무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삭제 〉 〈 삭제 〉	- 인용 조문 수정. - 시장이 설치하는 조직에 대한 예산 지원은 당연하기 때문에 삭제함. - 규칙 등 규정 형식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9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1항2항, 제13조2호, 제14조, 제15조 1항,2항,3항, 제16조1항3호, 2항, 3항을 따른다.	〈 삭제 〉	◦ 법 제18조의 규정과 같은 규정이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10조(정기예방접종) ① 시장은 법 제24조 제1항 각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기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삭제 〉	◦ 법 제24조의 규정과 같은 규정이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함.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발생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삭제 〉	◦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과 같은 규정이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12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 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삭제 〉	◦ 법 제37조의 규정과 같은 규정이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13조(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 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삭제〉	법 제38조의 규정과 같은 규정이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함.
제14조(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삭제〉	법 제41조의 규정과 같은 규정이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15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 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제1군감염병 2.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 3. 제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 4. 제4군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5.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6. 생물테러감염병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삭제 〉	◦ 법 제42조의 규정과 같은 규정이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16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삭제 〉	법 제43조의 규정과 같은 규정이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함.
제17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시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 삭제 〉	법 제46조의 규정과 같은 규정이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함.
제18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삭제 〉	법 제47조의 규정과 같은 규정이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1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삭제 〉	법 제49조에 규정되어 있어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함.
제20조(소독 의무)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삭제 〉	법 제51조에 규정되어 있어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함.
제2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u>방역네트워크</u>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u>방역</u>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문으로 판단되어 삭제 권고.
제22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및 홍보물품등을 제작배부하고 감염병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문화 정착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 등을 지정한 경우 <u>시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u>	제5조(홍보) ① <u>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 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u> ② 시장은 법 제36조 및 제37조 따라 감염병관리기관 등을 지정한 경우 <u>지정 내용을 시민에게 즉시</u>	- 표현 수정, 현행 제22조의 내용은 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조제목 변경. - 인용 조문 수정 및 표현 수정.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u>한다.</u> ③ 시장은 감염병 발생시 발생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u>시 홈페이지</u>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u>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알려야 한다.</u> ③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u>○○시 인터넷 홈페이지</u>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해야 한다. 〈 삭제 〉	◦ 표현 수정. ◦ 지자체의 규칙은 위임 규정이 별도로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함(법제처 2018. 3. 13. 의견제시 18-0025 참고).

4. ○○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명	지자체
○○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시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시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에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조례 제정('18. 4. 12.) 이후 상위 법령에 신설된 조례위임 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19. 12. 3. 신설)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함. ◦ 신설된 상위 법령의 조례위임규정을 반영하여 내용을 정비함. ◦ 상위 법령에서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 조례는 그 중 지원대상, 지원 범위 등을 특정하여 규정하는 것이므로 안전취약계층의 정의를 법률과 달리 이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그 밖에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거주자 〈 신 설 〉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현행 제2조에 있는 지원대상을 정비안 제3조제1항으로 옮김.
제3조(책무)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현행 제7조를 정비안 제2조제2항으로 옮기고 조문내용을 정비함.
제4조(지원범위) 재난취약계층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제3조(지원 내용)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현행 제2조를 삭제함에 따라 현행 제3조는 정비안 제2조로 이동시키고 조문내용을 정비함. ◦ 현행 제2조에 있는 지원대상을 정비안 제3조제1항으로 옮김.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구성원 6. 그 밖에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거주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재난예방시설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거주지 읍·면·동장(이하 “동장등”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	◦ 서식에 있는 첨부서류를 본문에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달리 신청인이 제출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리·통장이 할 수 있고, 또한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u>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직접 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친족이나 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이장·통장·반장이 대신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할 서류가 없으면 첨부서류 부분은 삭제 가능함.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①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결정) ①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동장등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 지원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장등은 직권으로 지원대상을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 현행 제5조제2항의 경우 신청이 아닌 추천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비안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함.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청인과 동장등이 알 필요가 있으므로 통지절차를 신설함. ◦ 현행 제5조제2항의 지원대상자 추천 내용을 정비안 제5조제2항으로 옮기고, 현행 제6조제2항은 지원신청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 신 설 〉 제7조(예산 확보) 시장은 기초 소방시설, 가스 등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 및 추천을 받은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동장등에게 통지해주어야 한다. 제7조(조사) 시장은 지원대상자 결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나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삭 제 〉 〈 삭 제 〉	므로 정비안 제7조에서 별도로 규정함. ◦ 통지절차를 신설함. ◦ 현행 제6조제2항의 경우 지원신청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비안 제7조에서 별도로 규정함. ◦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일반적인 규정 두고 있으므로 삭제함. ◦ 위임의 경우 개별·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하고, 위임 규정이 별도로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법제처 2018. 3. 13.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의견제시 18-0025 참조) 해당 규정은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함.

5. 인천광역시 ○○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명	지자체
인천광역시 ○○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구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인천광역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인천광역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 따른 위임조례이면서,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자치조례이므로 이 점을 명확히 규정함. ◦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는 법에서도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 상위 법령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해 조례에서 정의하는 경우 그 용어의 의미가 상위 법령에서의 의미와 달리 축소되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3.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	제2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	거나 확대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함. ◦ (현행 제3호) 금연지도원 위촉절차 및 직무범위 등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정의할 필요나 실익은 없음. ◦ (현행 제2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u>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u> 3. <u>버스정류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로써,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5m 이내 지역)</u> 4. 주유소 5. 주요도로 및 특화거리 6. <u>의료기관 및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u> 7. <u>삭 제 <2017. 1. 2></u> 8. <u>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u>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u>관련단체와</u>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u>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u> 3.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로서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5m 이내의 지역</u> 4. 주유소 < 삭 제 > 5. <u>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u> < 삭 제 > 6. <u>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서 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u>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u>관련 단체와</u>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의 제정으로 「학교보건법」에 규정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등 학교의 환경위생 정화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으므로, 현행 제2호의 인용법을 및 해당 구역을 수정함.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3937호, 2016. 2. 3.> 제8조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라 설정·고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8조에 따라 설정·고시된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으로 봄. ◦ (현행 제5호)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그 장소를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5. 3. 4. 의견제시 15-0032 참조) 필요하면 제8호 (검토안 제6호)에 따라 지정·고시로 처리 가능.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u>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u> 대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u>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u>취지와 장소 및 범위를</u>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삭 제 〉	법 제9조제8항에서는 이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을 포함하여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시설 및 장소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금연구역의</u>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u>제4조제2항과</u>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의</u>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u>제3조제2항 및 제3항</u>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하는 조문을 명확히 하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제6조 <u>삭 제</u> 〈2017. 1. 2〉	〈 삭 제 〉	
제7조(흡연실 설치 등) ① <u>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u>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제5조(흡연실 설치 등) ① <u>제3조에 따른 지정된 금연구역에는</u>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정한 장	제3조에 따른 장소에 흡연실 설치를 허용할 실질적 필요가 있는지 고민 필요.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실을 설치하는 사람은 해당 장소가 흡연실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추가한다.	소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금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장소에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흡연실에는 해당 장소가 흡연실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현행 제1항)「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227에 따라 '받고자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u>위촉여부를 결정한다.</u>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u>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한다.</u>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u>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u>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u>받아야한다.</u>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u>위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u>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u>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u>분실·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u>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u>받아야 한다.</u>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현행 제3항) 금연지도원의 위촉에 관한 업무 처리 순서에 맞춰 수정하고 별지 서식의 번호 정비. - 금연지도원 위촉장(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금연지도원증(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현행 제4항) 불필요한 표현을 생략함.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9조(금연지도원의 교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삭제 〉	법 제9조의5제5항 및 시행령 제16조의5제4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재기재의 실익이 없음.
제10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임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지도원 해촉 관리)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법인등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문장으로 수정하고 괄호 안의 문장은 “추천한 단체의 장”과 의미가 중복되므로 삭제함.
제12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u>윤용함을 원칙으로 한다.</u>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천광역시장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	제9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u>활동하도록 하여야 한다.</u>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천광역시장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역 외의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법 제9조의5제4항에서 규정된 일부 내용은 재기재의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제13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방법) 구청장이 영 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인용하는 조문을 명확히 하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제14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하거나 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제1항의 내용 중 홍보관 설치·운영을 이동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② 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모집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5조(공청회) 구청장은 금연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 구청장은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를 따른다.	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금연 및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홍보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모집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구청장은 금연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 영 별표 5 제2호다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 삭 제 〉	하여 별도로 규정. ◦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p.255에 따라 조례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은 생략하고 부과요건과 부과권자

현행	정비안	검토의견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삭제</u>	등에 관한 규정만 두기 때문에 부과절차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에 따른다는 규정을 둘 필요 없음. ◦ 위임의 경우 개별·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하고, 위임 규정이 별도로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법제처 2018. 3. 13. 의견제시 18-0025 참조) 해당 규정은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2021년 알기 쉬운 조례만들기 지원 사례집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7-1동)
전 화 044) 200-6760
F A X 044) 200-6972
